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2-02

# 방송통신 관련 법령 • 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ICT Law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Transformation: A Review of Current State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김희정/김진기/권오상/신현필/박윤미/김혜경

2012. 12.

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 보고서는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12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총괄책임자: 김희정

참여연구원: 김진기

권오상

신현필

박윤미

김혜경

# 목 차

요 약 문x
제1장 서 론 1
제2장 ICT 환경의 변화 3
제1절 ICT 생태계와 환경 변화
1. ICT 생태계 ····· 4
2. ICT 환경 변화 ····· 8
제2절 ICT 산업 현황13
1. 세계 ICT 산업 현황 ······ 13
2. 우리나라의 ICT 산업 현황 ······ 14
<b>제3</b> 장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 17
제1절 미국 17
1. 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22
3. 기타 관련기관
제2절 영국 28
1.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2. 기타 관련기관
제3절 호주
2.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Media Authority) 41
3.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47
4. 기타 관련기관

제4절 프랑스
1. ARCEP (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2. 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54
3. MCC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58
4. MINEFI (Ministè de l'É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59
제5절 캐나다61
1. CTR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61
2. Industry Canada ····· 64
3. 기타 관련기관66
제6절 소결론 69
1. 단일규제시스템 70
2. 복합규제시스템 70
<b>제4장 방송통신법제</b> 72
제1절 해외 방송통신법제 72
제2절 국내 방송통신법제
제3절 신규서비스 분야의 쟁점 80
1. 클라우드 서비스 81
2. 빅데이터 서비스
3. N-스크린 서비스 ······ 88
제4절 방송통신법제 개선방안91
1. 문제점 91
2. 개선방안 92
<b>제5장 ICT 산하기관 개선방안</b> 95
제1절 산하기관 현황분석 95
1. 산하기관의 특징과 유형 96
2. 해외 산하기관정책 현황 98

3. 우리나라 산하기관 현황 100	į
제2절 산하기관 개선방안 105	,
1. 시사점 105	,
2. 개선방안 106	)
제6장 결론 110	)
<b>참고문헌</b> ······ 112	

# 표 목 차

<표 2-1> C-P-N-D 생태계 개별요소의 진화 ·····	8
<표 2-2> 글로벌 사업자의 플랫폼 경쟁 현황	10
<표 2-3> 2011년 미디어 산업별 시장 비교	14
<표 2-4> 우리나라 인터넷 제공 및 가입자 현황	16
<표 2-5> ICT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자 현황 ·····	16
<표 3-1> 해외 방송정책 체제 및 규제기관	······ 71
<표 3-2> 해외 통신정책 체제 및 규제기관	71
<표 4-1> 독일 방송통신규제의 기본 틀	······ 74
<표 <b>4-2</b> > 방송과 통신의 개념 ······	······ 75
<표 4-3>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 개념의 변화	······ 75
<표 4-4> 유료방송서비스 비교 ····	····· 78
<표 <b>4-5&gt; ICT</b> 분야 법령과 관련 생태계 부문 ·····	······ 78
<표 4-6>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 체계	····· 79
<표 4-7> 2008년 이후 제정·개정된 주요 방송통신법령 ·····	80
<표 4-8> 빅데이터의 특성과 효과	86
<표 4-9> 국내 N-스크린 서비스의 현황 ·····	89
<표 5-1>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98
<표 5-2> ICT 관련 부처별 산하기관의 근거법령, 기능 및 주요 관련법 ······	103
<표 5-3> ICT 법령·산하기관의 개선방안	109

# 그림목차

[그림	2-1] Fransman의 ELM 모형 ···································
[그림	2-2] ICT 환경의 변화
[그림	2-3]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 수15
[그림	3-1] FCC 조직도
[그림	3-2] NTIA의 OSM 조직구성
[그림	3-3] TIA 조직도
[그림	3-4] Ofcom 조직도
[그림	3-5] BCS 조직도
[그림	3-6] DBCDE 조직도 ···································
[그림	3-7] ACMA 조직도 ···································
[그림	3-8] ARCEP 조직도
[그림	3-9] CSA 조직도
[그림	3-10] MCC 조직도
[그림	3-11] MINEFI 조직도
[그림	3-12] Ministry of Industry 조직도 ···································
[그림	4-1]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82
[그림	4-2]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현황
[그림	5-1] ICT 규제부처의 변화102
「그림	5-2] 2008년 이후 ICT 산하기관 변화100

## 요 약 문

ICT분야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의 발전, ICT 산업 간의 융합추세, ICT의 생태계화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성장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ICT산업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ICT 분야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성장발전 및 경쟁력강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ICT 분야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분야의 정부기능 재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련법령과 산하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현행 ICT 법제도와 산하기관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성장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ICT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법제 및 산하기관 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변화하는 ICT 생태계와 규제환경에 적합한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방송통신 법제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법제도와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분석범위는 우리나라 및 해외의 방송통신 법제도, 규제기관 또는 관련기관, 우리나라의 ICT 산하기관 체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ICT 생태계의 변화, 수직적 규제체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변화 등 방송통신법제와 산하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이요구되는 상황에서, 현행 방송통신법제와 산하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법제 및 산하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법제에 대해서는 첫째, ICT 생태계의 통합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ICT를 규율하는 소관 법령이 서비스별,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는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법령을 추가로 제정하게 되므로 ICT 관련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주무부처가 중복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부차원의 핵심 정책을 ICT 전문부서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목적과 접근 방법이 상이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ICT 생태계의 정책이슈를 각각 다룰 경우, 규제의 중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관성이 침해되어 효율적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 각 부문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나 법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법적, 제도적 해결이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개편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산하기관 체제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분야에서의 연구 및 행정지원의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방송통신 영역의 연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산하기관 역할 정립 및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산업 분야를 다루는 복수의 방송통신 관련 산하기관이 존재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친 기능 통폐합의 결과 있어야할 산하기관이 없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2008년의 조직개편과 산하기관 통폐합은 스마트 생태계의 출현을 예측하지 못했던 축소지향적인 개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직개편 당시에는 ICT 생태계의 출현에 대한 예측이 우세하지 않았으며, ICT 분야의 발전은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제조업 중심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ICT의 중심이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에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ICT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ICT 생태계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통합과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ICT 생태계의 추세 및

ICT 분야와 교통, 의료, 교육 등의 이종산업 간의 융합의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전문화된 산하기관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방송통신법제에 대한 개편은 첫째, C-P-N-D 생태계의 흐름에 맞춘 통합 법제체제의 수립, 둘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적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무 중복성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업무 성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기능별로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부처 별로산재되어 있는 유사ㆍ동일한 방송통신 산업 분야 지원기능을 일원화하여 부처 간, 기관 간 업무 중복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산하기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ICT 생태계 환경하의 방송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측면의 쟁점을 도출하고, 현행 방송통신 법제와 산하기관 체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제안과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방송통신 관련법제 보완 및 규제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제1장 서 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의 가치사슬 생태계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의 변화 및 ICT 산업 간의 융합화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ICT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 성장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ICT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우리나라의 경우, ICT 분야의 발전은 국가의 성장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ICT 관련 법령과 산하기관에 대한 전면적인검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의대비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는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선 분야로 확산되면서 융합과 혁신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미디어 그룹, 통신 사업자가 동일 시장을 두고 경쟁에 돌입하면서 경쟁 우위가 플랫폼·콘텐츠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이한 ICT 부문간 협력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생태계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인터넷과 기존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서비스의 출현, 그리고 융합서비스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양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등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보편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ICT 생태계가 수직적 폐쇄체계에서 수평적 개방체계로 진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서비스체제를 운영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음성통화 중심, 제조사는 단말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무선네트워크가 다양화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등 다양한 ICT 생

태계에서 생태계 참여자들은 경쟁과 동시에 협력관계를 이룩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ICT 생태계의 혁신은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분야 및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정책수립의 이해 당사자 간 협력을 요구하게 된다. 생태계 발전에 따라 ICT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의 산업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특정 사업에서 관련 사안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소지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로 대표되는 각각의산업 부문에서 융합현상에 대응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요구가 빈번히 일어나게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진흥을 주도할 수 있는 ICT 법제 및 산하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ICT 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규제와 정책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ICT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방송통신 법제도, 방송통신 규제기관 및 관련기관, 우리나라의 산하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방송통신 법제와 산하기관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 제 2 장 ICT 환경의 변화

## 제 1 절 ICT 생태계와 환경 변화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ICT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ICT 분 야는 주력산업으로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화기 기의 이용 확산 등에 따라 ICT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 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산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전체수출 대비 비중은 23.1%에서 43.5%로 약 두 배가 증 가하였다. ICT 분야는 2006~2011년의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에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분야로 역할을 담당해왔다(박창현, 김민 선, 2011).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외에도, ICT 분야는 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 분 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ICT 분야의 특성은 (1)기술발전의 전개, (2) 시장구조와 관행, (3)지리적인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기술발전의 전개 면에서 ICT 분야는 기술속도의 속도와 발전이 급격하게 일 어나고 있고 광범위한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규범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속도를 즉각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 다. 또한 기술보호와 사회전체의 후생 간의 균형 조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복잡하다 는 특징을 갖는다. ICT 분야는 융합과 통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사업자 간 융 합, 서비스 간 융합 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시장과 이에 대한 규제의 문제 등이 나 타나고 있다. 둘째, 시장구조와 관행 면에서 ICT 분야에는 이용자의 규모에 비례하 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선두주자의 기술이 산업 내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기술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표준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독점 사업자의 출현이 용이하며, 높은 진입장벽이나 배타적 거래

#### 4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와 같은 관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리적인 면에서는 ICT 산업에서의 지리적 장벽이 완화되어 국가 간 기술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품 등의 세부 분야의 국제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최경진, 황창근, 신영수, 이철남, 2012). ICT 분야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성을 토대로 이 절에서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ICT 환경 변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 1. ICT 생태계

생태계는 자연과학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에너지의 순환을 이용한 상호작용이 확립된 선순환적인 체계로 설명된다. 생태계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개방성(openness), 다양성(diversity), 상호작용(interaction), 공진화 (co-evolution)이다. 이 네 가지 특징 중 개방성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에너지 유입을, 다양성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과 에너지의 종류를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은 생태계 주체 간의 상생과 공생을 통한 순환관계를, 공진화는 상호작용의 순환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종(species)이 진화하고 유지·발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ZD Net Korea, 2012.11.19.). 전통적인 생태계의 개념은 무어(Moore)에 의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응용되어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조직이나 개념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를의미하며 상호작용, 분산된 의사결정구조, 자기 조직화의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최세경, 이용관, 2012).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생태계의 개념이 이제는 디지털, 인터넷 기술, 융합으로 대표되는 ICT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ICT 분야는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 있어서, 개별 요소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ICT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계의 개념이 유용하다. 고도화되고 융합된 기술이 출현하는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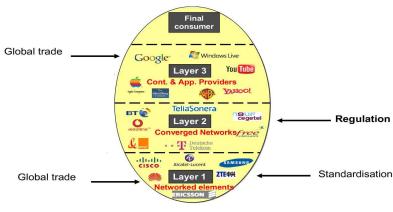
서 기존의 가치사슬을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지므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중 시하는 생태계 이론이 ICT 산업과 정책의 분석 틀을 수립하고 있다(ZD Net Korea, 2012. 11. 19.). ICT 생태계의 개념은 EU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 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digital business ecosystems)의 개념을 토대로 제시되었다 (Nachira, Dini, & Nicolai, 2002; 최 세경외, 2012). ICT 생태계는 C-P-N-D의 가치사슬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 생태 계로, 각 가치사슬 단계에서 경쟁하던 수직적 가치사슬이 방송통신융합을 거치면서 각 가치사슬 부문 간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수평구조로 변화하면서 부각된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전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ICT 생태계는 이제 ICT 산업 활성 화를 위한 핵심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최세경외, 2012).

전통적인 생태계 이론을 확장시킨 ICT 생태계 개념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 하는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생태계를 구성하며, 플레이어들은 한정된 자원 배분을 두고 경쟁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며 상생하고 있다. Fransman(2010)은 생태계를 어떤 환경 내에서 상호 작용하는 다수의 유기체 집합으로 정의하고, 계층모형을 이용한 ICT 생태계 모형인 ELM(the Ecosystem Layer Model)을 제시하였다. Fransman의 ELM 모형은 가치사슬과 유사한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요소 제 공업체(networked elements), 융합된 커뮤니케이션과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 (converged communication and content distribution networks), 플랫폼· 콘텐츠·애플리케 이션 제공업체(content and applications providers), 최종 소비자(final consumers)의 4 개의 계층이 ICT 생태계의 주요한 집단이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LM 모형에서 나타나는 4개의 계층은 6가지 유형의 상호관계를 통해 공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의 공생적 (symbiotic) 관계는 (1) 네트워크 요소 제공업체와 네트워크 사업자, (2) 네트워크 사업자와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 (3)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와 소비자, (4) 네트워크 요소 제공업체와 소 비자, (5) 네트워크 요소 제공업체와 플랫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 (6) 네 트워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윤석훤, 김사혁, 2011). 공통적

#### 6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으로 생태계 내의 각 분야의 사이에 상호작용은 공생을 목적으로 생태계를 통해 상호간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콘텐츠·애플리케이션 제공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박유리, 2012). [그림 2-1]은 Fransman이 제안한 ICT 생태계 계층모형인 ELM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Fransman의 ELM 모형

자료: Fransman(2010).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ICT 생태계는 수직적이고 폐쇄적 체계에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콘텐츠(Content) · 플랫폼(Platform) · 네트워크 (Network) · 기기(Device) 로 대표되는 수직적이고 일방향적 가치사슬 구조가 각 구성요소 간에 상호 연결됨으로써 ICT 생태계는 이전보다 한층 복잡한 경쟁과 협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근간으로 하여 ICT 생태계의 흐름에서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을 통합하거나 연계성을 확대시키는 서비스시장도 발전하고 있다. ICT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융합의 차원을 넘어 통합과 분화의 역동적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단계간의 경계도 가변적이다(Fransman, 2010).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

계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ICT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ICT 생태계의 C-P-N-D 중 어느 부문이 발전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플랫폼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네트워크는 ICT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의 근원이었으나 이제생태계의 주도권은 기타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준봉 외(2010)는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경쟁력 우위 요소가 네트워크 단말에서 플랫폼 ·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평적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강정석 외(2011)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ICT 생태계가 콘텐츠· 이용자 중심의 체제로 형성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ICT 생태계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생태계가 개방적인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과 더불어 분화, 전문화, 차별화의 현상이 역동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생태계의 진화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축이 되고 있다(안민호, 2010). 통합(convergence)과 분화(divergence)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경쟁 활성화와 신규시장의 창출에 기여한다. ICT 생태계의 변화는 조직 차원의 전문화와 고도화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 ICT 생태계 전체적으로 사업자 간경계가 약화되면서 각 분야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ICT 각 분야별 전문화 추세도 두드러진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자와 서비스가 다양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 2-1>은 소수 채널 네트워크 시대 - 다채널 네트워크 시대 - 포스트 네트워크시대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각 단계에서 C-P-N-D 각 요소 및 콘텐츠 배급의 개별요소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 C-P-N-D 생태계 개별요소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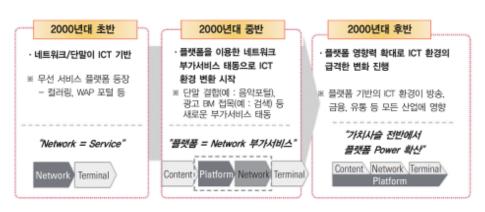
구분	(소수채널) 네트워크 시대	(다채널) 네트워크 시대	post 네트워크 시대	스마트 미디어 시대	
С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영화사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영화사, PP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영화사, <b>PP</b>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영화사, PP,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Р	· 되시교 비스기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위성,	지상파, 케이블, 위성,	
N	지상파 방송사	위성 방송사	IPTV, DMB	IPTV, DMB, 오픈장터	
D	TV제조사 (삼성, LG, 소니 등)	TV제조사 STP제조사	TV제조사 STP제조사 전화기 제조사	스마트 <b>TV</b>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배급	배타적 창구 one source- one use	케이블과 위성이 가능한 창구를 증가시킴 one source- multi use	창구 간 시간과 배타성의, 언제, 어디서나 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를 여러 단말기의 속성에 맞게 조합 또는 분해 adaptive multi- use device	

자료: Lotz(2007); 강홍렬 외(2011)

## 2. ICT 환경 변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무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광범위한 보급에서 나타나듯이 ICT 분야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ICT 환경이 유선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환경으로 PC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환경에 따른 기능별 단말의경쟁 환경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가 통합된 경쟁과 협력의 생태계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정우기, 2012). 이제 다양한 융합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ICT 산

업 간의 결합을 통한 가치창출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활발해지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활용을 통해 기존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림 2-2]는 ICT 환경의 기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ICT 환경의 중심은 네트워크, 기기 기반에서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부가 서비스로 변 화하고, 이후 플랫폼 기반이 전체 ICT 가치사슬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고 있다.



[그림 2-2] ICT 환경의 변화

자료: 정우기(2012)

## 가. ICT 환경의 변화와 특징

제 1절에서 설명한 ICT 산업의 특수성과 ICT 생태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전 세계적으로 ICT 산업환경은 글로벌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글로벌 ICT 사업자의 플랫폼 경쟁 현황을 살펴보면, 애플(Apple)은 iOS를 기반으로 다양한 ICT 기기를 연결하고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하여 상생하는 개방형 앱스토어를 제공하여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구글(Google)은 다수의 업체와 Open Handset Alliance(OHA)라는 수평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개방형 OS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우즈로 대표되는 OS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PC 운영체제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Open API (Application Protocol Interface) 정책을 통해 페이스 북 플랫폼에 외부 개발자가 쇼핑, 게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표 2-2>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ICT 사업자의 플랫폼 경쟁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글로벌 사업자의 플랫폼 경쟁 현황

구 분	애 Apple)	구글 Googl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페이스북 Facebook)
os	Mac OS	글os	Windows	-
모바일OS	iOS	안드로이드	Windows Mobile	-
웹브라우저	Safari	크롬	IE	-
검색엔진	•	Google	Bing	자체 소셜검색 또는 Bing
SNS	Ping	Google Me(예상)	MSN Live	Facebook
광고	iAD	애드센스, 애드워즈, 애드몹	adCenter	소셜애즈(Social Ads), Sponsor's Stories
어플리케이션 유통	Appstore	안드로이드마켓	윈도우마켓	페이스북앱스토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1)

글로벌 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ICT 산업 환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망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시장이 형성, 발전되고 있고, ICT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가 단위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ICT 산업의 글로벌화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 서비스의 기획·도입 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세계시장을 겨냥한 ICT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둘째, ICT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정보산업 성장의 기틀이 되는 ICT 산업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콘텐츠 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앞으로

ICT 분야의 발전을 통해 문화, 교육, 의료, 보안 등 전반적인 사회 각 분야가 더불어 성장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지식정보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ICT 국제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ICT 생태계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ICT 생태계는 개별 시장 단위의 경쟁에서 C-P-N-D의 가치사슬이 연계된 통합적인 경쟁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ICT 생태계에 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과 글로벌 콘텐츠의 유통확보가 핵심적인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ICT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성장을 위해 서는 C-P-N-D의 생태계 각 부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ICT 지원체제와 정책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ICT 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적으로 스마트 혁명 이 가속화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및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둘째, ICT 생태계의 핵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감에 따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중심으로 ICT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 플랫폼의 발전에 더불어 콘텐츠 분야도 급속 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과 미디어 기기의 확산을 통해 유통 되는 콘텐츠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 나. ICT 기반 신기술 산업1)

ICT를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기기 상호 간, 기기와 서비스가 결합, 융합, 내재화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나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가치사슬이 등장한다. ICT 기반의 신기술 산 업은 (1)기능의 확장·결합에 의한 산업, (2)ICT 기술의 고도화에 의한 산업, (3)ICT 기술이 다른 산업에 내재·결합되어 나타난 산업, (4)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플랫폼

<sup>1)</sup> 이 부분은 박석지(2012), ICT 신기술 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전략모형, 전자통신 동향분석, 제27권 제4호, pp.31-32 및 pp.34-35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산업의 등장은 이용자의 요구가 고도화되고 분화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ICT 기반의 신기술 산업을 각각 살펴보면, 기능의 확장·결합에 의한 산업은 디지 털 처리능력, 저장능력 등 기능 고도화를 적용한 분야로 카메라폰,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에서와 같이 기기의 소형화, 다양화, 다기능화로 나타난다. ICT 고도화에 의한 산업은 ICT 산업 내에서 서비스, 기기, 산업 간 융복합화가 심화되면 서 나타나는 산업으로 WiBro서비스, BcN, 4G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방송, VoD서 비스, UCC 등에서 서비스의 다양화, 지능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ICT가 다른 산 업에 내재·결합되어 나타난 산업은 ICT의 기술, 기능이 다른 산업에서 서비스, 기능 면에서 결합하여 출현하는 m-banking, e-learning 등의 산업으로 정보제공 및 통신기 능 등 서비스 다양화, 지능화, 스마트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ICT의 처리, 저장, 인터넷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내제화되어 다른 산업의 기기,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높이게 된다.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의 플랫폼 결합으로 나타나는 산업은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와 같이 ICT 산업의 정보이용 특성을 이용한 콘텐츠와 단말기 의 결합 등 비즈니스 플랫폼의 결합으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창출하는 경 우에서 볼 수 있다. ICT 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시장에서 비즈니스 플랫폼의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경쟁력 주도를 위해 플랫폼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박석지, 2012).

신기술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기술변화 자체에만 머물지 않게 된다. 스마트폰의 등장을 통해 나타난 ICT 산업의 변화는 혁신적 신제품의 등장이 ICT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다. 이처럼 혁신적 신제품이 야기한 변화가 시장 및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성장을 가져온다. 성장산업의 육성은 이러한 과정의 선순환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며, ICT 성장산업은 가치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ICT 산업은 과거 C-P-N-D 각 부문 간의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가치사슬 구조가 더 복잡

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는 ICT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박석 지, 2012).

## 제 2 절 ICT 산업 현황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의 일방향성 구조를 가지고 있던 ICT 생태계는 이제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 기기 이용의 급증을 통해 각 사업자의 경계 가 사라지는 개방형 • 글로벌 생태계로 재편되고 있다.

## 1. 세계 ICT 산업 현황

세계 ICT 산업은 2010년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ICT 산업 부가가 치 분석을 통해서도, ICT 산업은 전체 산업에 대비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성장 산업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2002-2009년 IC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8.7%로 전 산업 성장률의 1.6%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OECD 국가 대부분은 ICT 서비스업에 전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약 80%의 부가가 치가 ICT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ICT 산업의 글로벌화 추세도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데, ICT 제품의 전세계 무역량 중 50%가 비 OECD국가에서 일어 나고 있다. 이들 비 OECD국가의 ICT 기업이 전세계 ICT 분야 M&A의 24%를 차지 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로 성장하고 있다(전성주, 정현준, 2011). 주요 국가의 ICT 산 업 내 ICT 제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44.6%(2009년), 영국 16.9%(2008년), 독 일 52.1%(2009년), 프랑스 27.35(2008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79.3%로 ICT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전성주, 정현준, 2011).

ICT 산업환경 변화는 우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이 를 통한 정보교류와 관련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세계적

으로 하루 2억 개의 트윗이 올라오고 16억 회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포털사 등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진출하면서 SNS의 활용이기업의 핵심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ICT 산업의 리더로 부상한 애플과 구글은 폐쇄적 가치사슬 생태계 구조를 변화시켜 자사의 OS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참여자 전체의 공생이 중요한 가치사슬생태계 구조로 재편시키고 있다. 모바일에서 시작된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생태계는이제 스마트 TV, 웹으로 확산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앱개발사들의 협상력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유지은, 이기백, 최문기, 조항정, 2012).

## 2. 우리나라의 ICT 산업 현황

<표 2-3>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4.8%)과 게임시장 (9.8%)의 비중에 있어서 모두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화, 음악, 잡지, 서적 출판 등 기타 분야에서는 아직 세계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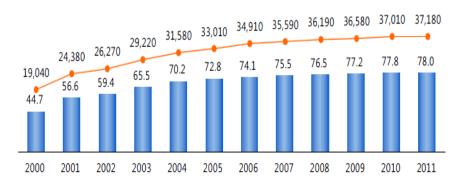
<표 2-3> 2011년 미디어 산업별 시장 비교

74	세계기	시장	한국/	시장	세계시장 중	A.01
구분	규모(백만\$)	구성비(%)	규모(백만\$)	구성비(%)	한국비종(%)	순위
인터넷 접속: 유무선	316,972	19.8	15,099	39.2	4.8	4
인터넷 광고: 유무선	89,766	5.6	1,758	4.6	2.0	7
TV가입 및 라이선스 요금	215,536	13.4	2,787	7.2	1.3	15
TV광고	185,005	11.5	2,127	5.5	1.2	16
음악	49,886	3.1	857	2.2	1.7	12
영화	85,433	5.3	1,794	4.7	2.1	10
게임	58,723	3.7	5,763	15.0	9.8	4
잡지 출판	75,221	4.7	662	1.7	0.9	17
신문	167,968	10.5	2,754	7.2	1.6	14
라디오	47,255	3.0	350	0.9	0.7	22
옥외광고	31,940	2.0	421	1.1	1.3	13
소비자/교육용 서적 출판	112,066	7.0	1,716	4.5	1.5	13
기업정보	191,125	11.9	2,897	7.5	1.5	11
전체	1,604,583	100.0	38,562	100.0	2.4	10

※출처: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년 이후 급격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확산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OTT 서비스, IPTV, 스마트폰, 스마트TV을 이용한 영상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추세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 터넷 이용자 두 명 중 한명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참여와 개방을 통한 1인 미디어 오픈마 켓등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은 저비용으로 다수의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3]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 수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자들 에게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응용서비스개발과 사업활성화가 기대 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는 17.5 Mbps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표 2-4>). 이는 세계 27위인 미국의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는 5.6 Mbps 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이다(OECD, 2012). 또한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 보급률은 100%를 넘어서 스웨덴, 핀란드, 일본보다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표 2-5>는 우리나라 시내전화·이동전화 가입자, 스마트폰 이용자, 2G·3G·4G 가입자, VoIP 가입자, IPTV 가입자 등 ICT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자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3,300만명을 넘어서서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 중 6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우리나라 인터넷 제공 및 가입자 현황

초고속 인터넷		자료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 (보급률)	37,18만명(78.0%)	KISA ISIS(2012. 12.)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	17.5Mbps	OECD(2012)
유선 인터넷 가입자 수(보급률)	1,800만명(35.4%)	방송통신위원회(2012. 8.)
무선인터넷 (보급률)	100.6%	OECD(2012)

<표 2-5> ICT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자 현황

구 분	가입자 수 (단위: 만명)
· 시내전화 가입자 (2012. 12.)	
· 이동전화 가입자 (2012. 12.)	5,335
· 스마트폰 이용자 (2012. 8.)	3,300
· 2G 가입자 (2012. 8.)	130
· 3G 가입자 (2012. 8.)	330
· 4G(LTE) 가입자 (2012. 11.)	13.3
-SKT	6.4
-KT	3.0
-LGU+	3.9
· VoIP 가입자 (2012. 12.)	1,163
· IPTV(VOD 포함)가입자 (2012. 12.)	6,310
-SK 브로드밴드	1,402
-KT	3,847
-LG U+	1,061

자료: 방송통신통계포털(2012), 방송통신위원회 (2012)

## 제 3 장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관2)

## 제1절 미국

미국 정부의 ICT 기획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국가정보통신 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와 연방 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있다. NTIA에서는 연방정 부의 무선통신관리, 통신정책수립, 대외적 무선통신분야 및 중장기 정보통신 정책 전략과 "IT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며, FCC는 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민간부분 의 상업적 성격의 전파 및 주파수를 관리하고 위성통신, 유무선TV 등 모든 무선통 신에 관한 인ㆍ허가업무나 전파관리 등을 "감독업무"를 관장한다.

NTIA와 FCC는 전파관리 업무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는 1934년 통 신법 (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있다. 1934년 통신법에 의하면 FCC는 민간이 사용하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 편익 및 수요에 부응하여 잠재적인 혼신의 통제, 운 용의 기준의 제정 등을 통한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 부에서도 사용하는 전파의 관리와 무선국 운용은 대통령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5). 이러한 관리체계는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통신 "정책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이 독립되어 전파관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분리 경향은 세계적 추세로 여타 국가에서 FCC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창설하고 있다(한국전파진흥원, 1999).

## 1. FCC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보통신분야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지상파 텔레 비전,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등의 방송부문과 전화 등의 통신 부문을 모두

<sup>2)</sup> 제 3장은 김진기 교수(항공대학교)의 원고자문을 통해 작성되었다.

책임지고 있다. FCC는 직접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법에 의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개정 및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FCC가 담당하는 전파관리 업무는 1934년 통신법에 의하여 민간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무선국 분류, 각급 무선국이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규정, 무선국별 주파수할당, 각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 출력 및 운용시간의 지정 무선국의 위치 지정 등이다(김한주, 1997).

## 가. 역할

미국 내 모든 주(州)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 주의 공익위원회는 주 내 통신을 감독하는데, 일반적인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 면 허 갱신의 가부를 재정하는 준사법권을 가지며, 방송계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다(디지털 타임즈, 2008).

### 나. 임명

위원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임기 5년의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명씩 임기가 만료되는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인 중 동일정당 소속의 위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며, 위원장의 재직기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들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는 스태거링 시스템(stagger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04).

#### 다.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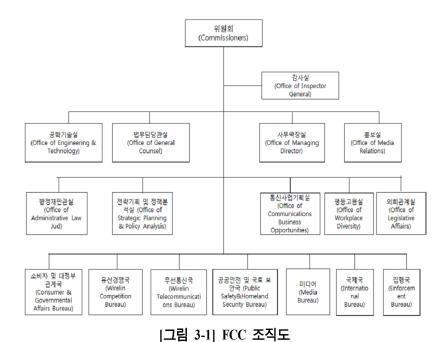
주요 업무는 통신정책의 수립과 규제,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무선통신사업자의 진입 허가, 방송국 허가 및 운용 감독, 기술표준 설정 및 감독, 서비스 품질 감시, 요금

규제, 상호접속조건 제정, 주파수 할당 및 조정, 번호계획 통제, 전기통신 관련 국제 협상 지원및 국제협약 이행의 책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이 있다.

#### 라. 조직구성

유선, 무선, 방송서비스 등 개별적인 서비스 별로 구분되어 온 기존 FCC의 역할 분담이 독점체계에서 경쟁체제로 시장 환경이 변모됨에 통신위원회가 지향하는 주 요역할과 시장변화에 부합하게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되었 다. 이는 기술유형에 따랐던 기존의 정책수립 방식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디지털 화로 촉발된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단행된 조치였다. 이후 2006년 9월 25일, 공공안전과 관련한 커뮤 니케이션 이슈를 다루기 위한 부서로 공공안전과 국가안보국(Public Safety & Homeland Security Bureau)이 신설되어 10실 7국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FCC는 위원회 산하에 7국(bureau) 10실(office)의 사무조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 로 국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며, 실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각 국(Bureau) 은 주요 정책현안문제를 발굴하고 방송통신 정책문제와 관련 직원들의 업무를 더 잘 조율하기 위하여 1949년에 설치되었다. 그 이전에 직원들은 기술, 법, 회계 등과 같이 기능별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체계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 째, 직원들은 generalist가 되어야 했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지 못하 였다. 둘째, 각 계열의 구성원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이 정책문제에 관하여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대답을 얻 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책문제에 관해 보다 통일된 견해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분야별 Bureau로 조직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정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자료: http://www.fcc.gov/encyclopedia/organizational-charts-fcc;방송통신위원회(2009)

현재의 Bureau 체계의 주요 구성은 방송통신사업 분류에 따른 것이다. 즉, 전화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 방송 및 케이블TV를 규제하기 위한 미디어국(Media Bureau), 전파문제를 다루는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이 있고, 이에 더하여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 집행국 (Enforcement Bureau), 소비자 및 대정부관계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도 설치하였다. 제일 마지막으로 2006년에 공공안전 및 국토보안국(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이 설치되었다 (한국전파진흥원, 2009). 유선경 생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 미디어국(Media Bureau),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은 각각 관련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은 국제차원에서의 통신정책과 주파수에 관련된 입법기능을 재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포럼에서 미국의 정책을 알리고 국제적 규제논의를 주도한다. 국제국에는 국장실(Office of the Bureau Chief)과 더불어 정책과(Policy Division), 위성과(Satellite Division), 전략분석협상과(Strategic Analysis and Negotiations Division)가 있다.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은 통신법과 FCC 규칙·지침 등의 집행, 통신법 위반행위조사 및 조치·권고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 및 대정부관계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민원제기(complaint) 처리와 연방·주·자치 정부와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방송통신위원회,2009). 공공안전 및 국토보안국(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은 9.11사태 이후 생겨난 부서로서, 위원회에 대하여 공공안전, 국토보안, 국가안보, 비상관리 및 대책, 재난관리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권고한다. 주요업무로는 911 긴급호출 서비스 정책, 사용자 정보의 공개 및 도청 문제, 재난시 통신대책, 방송통신 네트워크 안보 문제 등이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7개의 국에 더하여 위원회의 정책, 절차,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10개의 실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사무국장실(Office of Managing Director), 홍보실(Office of Media Relations), 공학기술실(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 법무담당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행정재판관실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전략기획 및 정책분석실(Office of Strategic Planning & Policy Analysis), 통신사업기회실(Office of Communications Business Opportunities), 평등고용실(Office of Workplace Diversity), 의회관계실(Office of Legislative Affairs)이 있다.

이들 중 특히 통신법의 집행과 청문절차 등에 관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담당관실, 행정재판관실 등이 있다. 우선 법무담당관실은 위원회 및 각 국/실에 대한 총괄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CC를 대표하여 연방법원 소송 시 소송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재판관실은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위원회가 최종결정(final decision)을 내리기 전에 1차 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사무국

장실은 일반행정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규칙 제정/규제 정책/사업 인가/행정 제재/청문 등의 중요한 규제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즉, 사무국장실은 위원회 내의인사관리, 노무관리, 예산 및 재무관리, 정보관리 및 데이터 처리, 조달 및 사무실 관리, 관리 분석, 행정적 서비스 및 기록과 안전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09).

#### 2.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70년에 창설된 백악관의 통신정책청과 상무부의 통신청을 통합 이관하여 상무부의 산하기관으로, 1978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NTIA는 미국 내통신과 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 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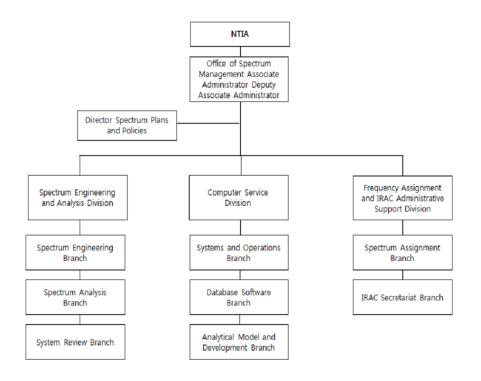
상무부의 14개 산하기관중의 하나로서 주요 하부 집행기관들과 더불어 연방정부와 국제간의통신과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통신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수립, 대외적 무선통신 분야 및 정보통신 정책전략, 기술개발, 정보조직 증진, 국내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소비자를 위한 보다 수준 높은 통신상품 제공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그밖에도 국회 및 FCC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국제 쌍무회담 및 다자간 회의에서 발표할 투자촉진정책이나 경쟁주창정책을 개발하고, 연방정부에 할당된 주파수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민간 및 여타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표준개발을 포함한 통신기술 관련 연구를 시행한다(정보통신부, 2005).

## 나. 조직구성

NTIA는 5개의 집행조직(Spectrum management, International affairs,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pplication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sciences)과 4개의 일반 스태프 조직(Policy coordination and

management, Congressional affairs, Public affairs, Chief counsel)으로 총 9개의 세부조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 2005). NTIA 전파관리 업무의 집행은 전파 관리 전담부서인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OSM)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관련 자문 및 보조기구로서, IRAC와 SPPAC (Spectrum Planning and Policy Advisory Committee) 와 ERMAC(Electromagnetic Radiation Management Advisory Council)등을 두고 있다.



[그림 3-2] NTIA의 OSM 조직구성

NTIA내에서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OSM의 구성은 그림 [3-2]과 같이 Spectrum Engineering Division, Computer Service Division, Frequency Assignment and IRAC Administrative Support Division 등의 3개 Division과 Spectrum Engineering Branch 등

8개 Branch를 두고 있다. 각 부서의 역할 및 담당업무는 1)연방정부 대리인으로서 전파사용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 2)전파자원평가 (Spectrum Resource Assessments: SRAs)를 수행하고 NTIA의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전파관리 정책의 추진 3)NTIA의 연방전파관리 절차 규정 발행 및 갱신, GMF (Government Master File)의 유지하고 활용하여 OSM의 전파관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주, 1997).

## 3. 기타 관련기관

7. CTI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CTIA는 1984년 무선통신업계를 대표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회원단체이다. 협회회원은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품의 무선통신 사업자와 공급업체, 제조사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TIA는 정부를 대신하여 무선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다양한종류의 정보와 소비자에게 제공과 모바일장치 재활용 증진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무선접근성에 대한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Wireless.com을 통해무선기술 사용방법을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캠페인으로는 "Go wireless, go green", "On the road, off the phone"으로 10대들에게 공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AccessWireless.org를 통해 무선제품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CTIA협회의 Steve Largent는 2003년부터 역임하여 현재까지 CEO의 역할을 맡고 있다.

CTIA의 부서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ternal and State Affairs는 미래를 위한 무선 업계 비전을 홍보하고 무선통신 문제에 대한 주 의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General Counsel는 CTIA의 모든 부서에게 법률 고문과 필요시 외부 자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Government Affairs는 Capitol Hill과 행정부 부서, 기관에 무선 산업에 대한 목 소리 대변하고 있다. Operations은 회원, 기술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CTIA WIRELESS® 와 Mobile CONTM 대회를 담당하고 있다. Public Affairs는 무선관련 공공정책, 미디어 회원, 기업분석, 국가&지역 및 무선 미 디어 통신자원의 기능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gulatory Affairs는 무선업계 대 표 부서로서 이전 FCC와 다른 연방정부 조직은 무선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 며, Wireless Internet Development은 무선인터넷 개발과 WIC를 지원하여 무선데이터 분야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 나. 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전국방송사연합'은 지상파 라디오와 텔 레비전방송사들의 이익을 보호 · 신장하려는 목적의 이익단체로서, 미국영화협회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와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이익단체 중 하나이다. NAB의 역사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1920년대 초에 시 작되었는데, 1923년 4월 54명의 라디오 방송사 사장들이 시카고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1938년에는 NAB의 첫 정규직 사장을 고용했으며, 소속 방송사도 461개로 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에는 소속 방송사가 512개에 달했 고, 미국 내 라디오 방송사의 92%가 NAB의 소속으로 등록되었다. 1951년에는 당시 의 텔레비전 방송사 연합이 NAB로 통합, NAB의 명칭이'전국라디오텔레비전방송 사연합'(NARTB: National Association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ers)으로 바뀌 었으나, 1958년 다시 NAB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NAB는 매년 라스베이 거스에서 대규모의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방송기술, 수준 높 은 프로그램, 쌍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전시되고 있다(박남기, 2004).

1922년 창립된 미국방송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 회원방송국들은 협회가 정 한 라디오 윤리규정과 TV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NAB는 ①모든 형태의 청각·시각 방송과 예술의 발달을 지원, 추진하고 心회원사를 부당한 이익 침해나 박 해로부터 합법적이고 온당한 방법으로 보호하며 🗁방송 산업이 일반 대중에게 최

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송 기관들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사회의 관 습이나 규범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 위해 설립됐다.

1937년경 방송계는 NAB를 통해 그들의 첫 번째 자체 규제 지침을 채택했다. 1945 년에 중요한 부분을 개정했고 그 이후부터는 당국의 규제 압력의 영향이나 회원사 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왔다. NAB는 특히 FCC의 통제에 대해 방송인들이 방송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방 송 산업에서의 노사 관계의 정상화,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기술 교류 및 연구, 보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나 조언 등의 활동을 한다. NAB는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방송에 있어서의 원칙을 자율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물론 이 원칙은 모든 미국 내의 방송국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제 조 항은 아니다. NAB에 회원으로 가입한 방송사 가운데서도 이 규약을 지키기로 서약 한 회사만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NAB 규약은 자율 규제이므로 강제성이 거 의 없으나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약을 준수하기로 서명한 방송국만 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징인 Code Seals의 사용권을 박탈하는 벌칙이 규제의 전부이다.

방송인들이 이처럼 강제성이 약한 NAB 규약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규 약이 책임있는 방송에 대한 현실적인 윤리적 접근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여기며, 둘 째 자신의 자율 규제 규정을 개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이며, 셋째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그들을 규제할 위험 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편 NAB 규약은 너무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비 판을 받기도 한다. NAB의 윤리위원회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자체 규범을 관리·집행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의 책임자는 회원사의 상황을 점검, 위반 사례가 적 발되면 윤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방송의 광고와 프로그램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윤리규정의 주요 대상이 된다. 윤리위원회의 가입은 신청에 의해 가능하고 그 대상 은 개인별, 회사 또는 그룹 등 누구나 될 수 있다. 윤리규정은 NAB가 정한 광고기 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방송국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광고를 방송할 때에 NAB의 윤리규정 표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협회의 윤리규정과 함 께 라디오·텔레비전 보도 국장 협회, 전문기자-시그마델타카이협회, 여성방송인협 회, 광고협회 등 다른 많은 조직이나 협회도 윤리 기준을 갖고 있다. 협회지인 'NAB Highlight'를 발행하고 있다(박남기,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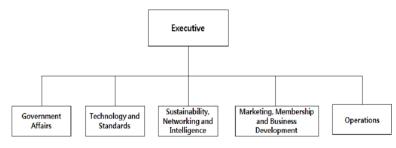
# 다. ATSC (The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는 JCIC, EIA, NAB, NCTA, SMPTE에 의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디지털 텔 레비전, 대화형 시스템, 광대역 멀티미디어 통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 송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TSC의 표준은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 코, 대한민국의 국가 표준으로 되어 있고, 남미의 여러 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 이 표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의 표준에는 ATSC외에 유럽에서 개발 된 DVB, 일본의 ISDB 등이 있다. 현재 ABC와 FOX는 720p를, CBC와 NBC는 1080i 로 방송 중이다. ATSC 방식은 변조 방식으로 8-VSB 변조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 라.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1988년 미국 전화 공급자 협회와 미국 전자 공업 협회(EIA)의 정보 통신 기술 그 룹(ITG)이 합병하여 설립된 협회이다. 이후 2000년 멀티미디어 통신협회(MMTA)와 통합되었다. TIA는 ICT 산업대표의 협회로 표준개발, 정책사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시장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 브로드밴드, 모바일 무선, 정보기술, 네트워크, 케이블, 위성, 통합 커뮤니케이션 등의 참여로 기업 환경을 향상시키고 있 다. TIA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 TIA 조직도

자료:TIA 홈페이지

# 제2절 영국

영국은 방송 · 통신의 융합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나 규제 및 정책 기구의 변화 역시 신속하게 추진되어 왔다. 2000년 들어 영국정부는 방송 · 통신 융합에 대처하지 않 고는 국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존의 점진적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단일 규제기구를 설립하는데 착수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복지 증진을 위 해 영국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 단일 규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였다 (DTI & DCMS, 2001). 그 후 하원에서 Ofcom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영국 정부는 2001년 7월 Ofcom에 관한 Ofcom 법안(Office of Communications Bill) 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2002년 의회는 청문회와 각종 자문을 받은 후, 2002년 말에 완전한 형태의 법안을 작성하였다(Ofcom Act 2002). 2003년 입법화가 이루어진 이 후, 2004년 초 기존에 흩어져 있던 5개의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 기구(독립텔레비전 위원회(ITC), 통신청(OFTEL), 라디오청(RA), 방송기준위원회, 라디오 위원회(BSC)) 들을 통합하여 독립규제위원회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정식으로 출 범하게 되었다.

### 1.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영국의 Ofcom은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2003)에 의해서 TV, 라디 오, 텔레콤, 무선 통신에 대한 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들에게 부 과된 규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및 법집행(enforcement)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선택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나 여 전히 법의 집행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서 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상식, 2008).

# 가. 역할

영국은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이 개별 법령으로 존재하면서 통신, 방송, 전파 분 야를 각각 별도로 관장하고 있는 한편, 동시에 2003년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통신, 방송 및 일부 전파 규정까지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s Act, 2003)'이 제정되어 통신, 방송, 전파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이 커뮤니케이션 법에는 Ofcom의 구성, 기능 및 역할과, 미디어 산 업의 각종 규제 단순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방송 분야의 허가, 경쟁 및 합병 등에 관 한 규정과 함께 특히 전파 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파수를 네트워크와 같이 인프라로 구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서 비스 및 관련설비에 대한 단일 규제 틀을 채택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및 콘텐츠 에 대한 규제 역시 담겨 있다.

이처럼 Ofcom이 경제적 규제, 내용 규제, 주파수 규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단일 규제 기구로 탄생한 것은 2003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법 제 1장에서는 통신, 방송, 전파 분야의 기존 5개 규제기구 및 그 권한을 모두 통·폐합하

여 Ofcom으로 일원화시킴을 밝히고 있다. 각 계층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자 통신 사업자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자통신사업자(모든 통신 및 방송 사업자), 공중전자통신사업자(전자통신사업자 중 공중(public) 대상 사업자), 공공전화사업자 (공중전자통신사업자 중 PSTN 사업자)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해 권리·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방송서비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및 전송은 일반인가 요건 을 충족해야 하고,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자기 채널을 운영할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전파관리 체계에 있어 영국은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신규 주파수를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중립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즉, 면허권자의 자율성 을 확대해 줌으로서 신규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유도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 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통신, 방송, 전파 분야의 단일 규제 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3G 확장 대역(2.5-2.6대z) 할당 시 이동통신, 이동멀티미디어, 무선고정통신(Mobile Wimax) 등으로 다양한 용도 및 기술 방식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전파진흥원, 2008).

Ofcom의 역할은 크게 디지털시대로 들어가는 통신산업으로서 국민 및 고객에게 흥미를 제공, 모든 제공자들 사이의 완전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 속 에서 활발하게 도입자, 창조자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지원, 영국의 모든 electronic media와 communications networks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발전을 독려 등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나. 목표

Ofcom의 목표는 첫째,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장으로 만들 것, 둘째,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보편적인 서비스를 강화 및 유지할 것, 셋째, 공정경쟁을 위한 감시의 역할, 즉 소비 자의 이익을 위한 효율적 경쟁 주도, 넷째, 그러나 소비자의 보호, 보편적 서비스 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규제하며 규제를 최소화, 유연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한 국컨텐츠진흥원, 2001).

# 다. 주요기능

Ofcom의 주요기능으로는 방송 및 통신사업자 허가·감독,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주파수 배분정책 수립 및 할당, 광대역통합망(BCN) 추진, BBC를 포함한 방송 사업자의 방송콘텐츠 규제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라. 임무

2003년 통신법에 기초한 Ofcom의 주요 임무는 스펙트럼의 최적 사용,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확대, TV 및 라디오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양 적 확대, 방송 서비스에서 소비자 선택, 침해적인 유인물로부터 시청자 보호, 프라이 버시 혹은 불공정 요소로부터 시청자 보호, 전자기장 주파수의 최적 이용 확보, 광 범위한 전기통신서비스가 국내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보, 광범위한 고품질의 TV 및 라디오 서비스 확보, 방송에 있어서 다양성의 유지, 시청자들을 유해내용으 로부터 적절히 보호, 시청자들을 불공정성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보호이다. 2006년 Ofcom 3개년 전략계획 프레임워크는 기술 융합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 도록 Ofcom의 통신서비스 분야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5개 정책분야에서의 방 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5개의 정책 분야로 지정이 된 정책분야는 시장 중심적 스펙 트럼 운영, 융합시장에서의 경쟁 및 혁신의 향상, 공익적 목표들의 달성, 시민과 소 비자의 권한 강화 및 규제의 적용능력을 향상, 통신규제에 관한 법적. 경제적인 틀 의 진화를 보조 등이다. 2009년 현재로는 2006년 설정된 5개의 정책분야에 추가 사 항들을 보충하고 2010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2009-10년 중점 검토 사항으 로서 디지털 배당과 같은 스펙트럼해제, 유선(fixed)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제고, 유료 TV 시장 경쟁 제고,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규제 도출, 모바일 규제 방법의 검토, 접근 및 수용(inclusion), 공영방송 미래의 준비, 라디오 진화의 보조, media literacy 제고, 소비자보호 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영국은 통신과 방송 정책을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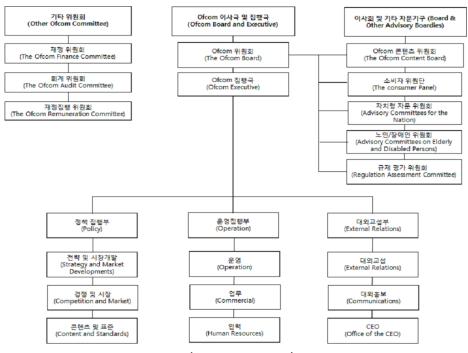
한 별도의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통신 정책은 통상산업부(DTI)가 담당하며 규제는 과거에 Oftel이 수행하였다. 방송 정책은 문화매체스포츠부(DCMS)의 방송정책국이 담당하며, 과거 방송 관련 규제기구로는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RA(Radio Authority),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등이 있었다.

# 마. 조직구성

Ofcom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방송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권한도 상당부분 이양 받아 집행하고 있다. Ofcom 조직은 통 신과 방송의 구분 없이 크게 위원회와 집행국으로 구분되고, 집행국은 다시 정책, 운영, 대외교섭의 업무로 구분 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Ofcom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중심으로 정책국(Policy Executive)과 운영국(Operations Executive)을 두어 운영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에 서 임명하지만, 위원장은 Ofcom 내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 조직 구성원은 정식 국가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공사(Public Corporation)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정책국 산하에는 전략 및 시장개발팀(Strategy and Market Developments), 경쟁 및 시장팀(Competition and Markets), 콘텐츠 및 기준팀(Content and Standards) 등의 세 개 그룹이 존재하고, 운영국 산하에는 운영팀(Operations), 상 업팀(Commercial), 인력자원팀(Human Resources) 등의 세 개 그룹이 존재한다. 또한 Ofcom은 각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Ofcom 콘텐츠 위원회(The Ofcom Content Board), 소비자위원단(The Consumer Panel), 영연방국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the Nations),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Older and Disabled People), 규제평가위원회(Regulatory Assessment Committee) 등이 존재한다.

Ofcom은 조직의 독립성과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Ofcom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필두로 하여 정책국(Policy Executive) 과 운영국(Operations Executive)이 포진하고 있다. 위원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지만,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은 정식 국가공문원 은 아니고, 일종의 공사 (Public Corporation)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Ofcom의 조직도 는 [그림 3-3]과 같다. Ofcom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의장을 포함한 6명의 비상임이사와 CEO를 포함한 3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동 이사회는 Ofcom을 일 종의 공법인(statutory corporation) 형태로 설립하면서 Ofcom이 규제하는 회사들의 이사회를 본따 도입한 것으로 과거의 위원회(commission) 체제와 비교된다. 비상임 이사는 기업혁신기술부 장관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는데, Ofcom의 지명 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가 그 선출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돕는 다. 상임이사는 의장과 비상임이사들이 임명한다.



[그림 3-4] Ofcom 조직도

자료: Ofcom홈페이지

# 바. 담당업무

Ofcom이 경제적 규제, 내용 규제, 주파수 규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단일 규제 기구로 탄생한 것은 2003 커뮤니케이션 법에 따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법 제 1장에서는 통신, 방송, 전파 분야의 기존 5개 규제기구 및 그 권한을 모두 통·폐합하여 Ofcom으로 일원화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Ofcom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방송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권한도 상당부분이양 받아 집행하고 있다. Ofcom 조직은 통신과 방송의 구분 없이 크게 위원회와 집행국으로 구분되고, 집행국은 다시 정책, 운영, 대외교섭의 업무로 구분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Ofcom의 규제업무는 집행부(Executive)에서 담당한다. 집행부는 Ofcom의 운영조직 및 활동관리, 정책수행 관리를 담당한다. 집행부는 정책집행부와 운영집행부로 나뉘고, Ofcom의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집행부(Policy Executive)'는 정책이슈 전반을 관장하고, 컨텐츠 위원회와 소비자 위원단, 기타자문위원회 등과 협력, 전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한다. 통신법 집행 등 사후규제 전반을 담당하는 주부서는 정책집행부 산하 '경쟁그룹(competition group)'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타 부서 및 과와 협조체제가 가동되거나 팀이 신설되어 사안에 대응하기 때문에 경쟁그룹만 사후규제를 독점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집행부 산하 정책집행부와 운영집행부에 주파수정책 그룹은 혼재되어 있다.

영국은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이 개별 법령으로 존재하면서 통신, 방송, 전파분야를 각각 별도로 관장하고 있는 한편, 동시에 2003년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통신, 방송 및 일부 전파 규정까지 포함하는'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이 제정되어 통신, 방송, 전파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형태를 보인다. 이 커뮤니케이션 법에는 Ofcom의 구성, 기능 및 역할과, 미디어 산업의 각종 규제 단순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방송 분야의 허가, 경쟁 및 합병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특히 전파 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파수를

네트워크와 같이 인프라로 구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서 비스 및 관련설비에 대한 단일 규제 틀을 채택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및 콘텐츠 에 대한 규제 역시 담겨 있다(한국전파진흥원, 2008).

Ofcom은 통신 및 방송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집행권한을 행사한다. Ofcom의 집행권은 라디오주파수 집행, 방송 및 통신 분야 집행 등 2003년 통신법, 2006년 무 선전신법, 1990년 방송법, 1998년 경쟁법 등 관련법으로부터 나온다. Ofcom은 통신 법 및 방송법의 규제집행 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의 경쟁법(그리고 EC조약 제81조, 제82조) 및 기업법의 규제집행권한은 일반 경쟁 규제기관인 OFT와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관할 형식은 다음과 같다.

- 관련 규제이슈가 제기되면 각 규제기관은 해당 규제기관에 제기된 이슈를 고 지하고 상호협의 하여 해당 사안을 담당할 규제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 통상적으로 통신과 관련된 사안은 Ofcom이 담당한다. 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반경쟁적 합의 금지 및 지배력남용 금지는 통신법에서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사업자의 면허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면허사업자는 경쟁법 뿐만 아니 라 통신법에 따른 면허조항도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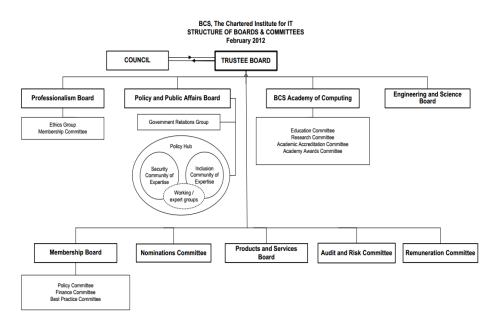
# 2. 기타 관련기관

7. BCS (British Computer Society-The Chartered Institute for IT)

BCS는 새로운 생각, 교육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IT산업, 학계들간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BCS는 1957년 런던 컴퓨터 그룹에서 과학자 협회와 합 병하여 만들어졌다. BCS는 정부, 산업계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을 서로간에 연계시 키고 프레임워크와 표준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IT에 대한 전략적 문제들을 학 계와 함께 토론하고 있다. 미션은 정보사회를 활성화하고 정보기술 과학 및 발전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BCS는 영국의 IT전문가를 위해 리더쉽 프로그램들과 미래 중요한 IT이슈들에 대

해 발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BCS Academy of Computing, BCS Entrepreneurs Programme, Green IT, Professionalism Programme, Race Online 2012. 또한 IT분야에 다양한 주제 문제에 대한 정보와 댓글& 의견을 제 공하고 있다. 대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된다. 현재 대표는 Mr Bob Harvey으로 2015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BCS의 조직도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BCS 조직도

자료: BCS홈페이지

### 나. Intellect

Intellect는 영국의 정보산업, 통신,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협회(CSSA: Computer Software Services Association)와 영국 전자산업연합회(FEI: Federation of Electronics Industry)를 2002년 통합하였으며, 전 체 회원사의 매출액이 영국 GDP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사들 간에 이익을 도모하고 높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 및 공공

업무 정보기술, 통신 및 전자 비즈니스 초점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Intellect는 통신 및 무선 부문 핵심정책과 이슈 등 디지털 통신 분야에 대해 목소 리를 내고 있으며 Ofcom과 협력하고 있으며 산업전망과 주요 정책, 시장문제에 대 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다. 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영국 DTI는 통상산업부의 역할로서 통신산업 전반과 방송기술정책 수립 및 지원 을 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국제협약 및 공공안전 등을 위해 네트워크, 주파수 관리 정책에 관해 Ofcom에 정책 권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정책 업무(콘텐츠 수출, 미디어 소유, 무료텔레비전에서의 스포츠 방 영권, 난시청지역에 대한 텔레비전 접근, EU·유럽의회·기타 회의에서 방송 관련 발의, 영국 공공서비스방송 정책, BBC 칙허장 및 협정서 관리 등)는 문화미디어스 포츠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산업이 영국, EU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표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지만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 를 유지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 라.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중앙정부 부처로서 1992년 메이저 총리의 선거공약에 따라 설립된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가 199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정 책활동으로 주로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작산업 대외 수출지원, 예술장르별 창 작 및 제작 지원,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가 지원 등이 있다.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기 위해 방송, 광고, 건 축,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비디오·사진, 출판, 소프트웨어·컴퓨터게임, 미술 품, 음악·시각·공연예술, TV및 라디오 산업 등의 진흥을 담당하고, 방송분야에서 는 BBC 및 기타 공공서비스방송, 상업라디오, 상업텔레비전, 커뮤니티 라디오, 디지 털라디오, 디지털 텔레비전, 국제방송, 미디어소유, 프로그램 기준, 기술적 이슈 등 에 대한 정책수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DCMS는 방송에 대한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규제기구 위원 임명 및 감독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제3절 호주

호주에서 방송 통신 전파 및 인터넷 부문의 규제는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 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이하: DBCDE) 산하 법정 위원회인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이하 ACMA)가 담당하고 있다. 이전 방송 규제는 호주 방송청(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이, 통신규제는 호주 통신청(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이 각각 별도로 맡고 있었으나 2005년 7월 호주 통신 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Media Authority)에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통합하여 담당하는 것으로 통합규제기구가 출범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산업의 경쟁규제 및 통신 산업의 접근 규제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의 관할에 속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호주에서는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이미 270여개의 상업 라디오 TV 방송국과 50여개의 상업 TV방송국 300개 이상의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국과 80개 이상의 커뮤니티 TV방송국 이 2개의 전국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과 더불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55,000명 이상이 비행, 항공, 해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주파수 사용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면허만 무려 170여개가 발급되었으며, 600여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s)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송·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호주 의회와 정부는 자율규제 와 공동규제를 규제정책으로 채택하였고 방송 통신 인터넷 산업 참가자들에게 지나친 또는 불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 부과를 지양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1; ACMA, 2010).

이밖에도 통신 산업의 자율규제기관 (Communications Alliance Ltd.), 호주 통신접 근포럼(Australian Communications Access Forum) 및 통신산업 옴부즈만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이하 TIO)이 있으며, 이들은 통신규제체 계에 있어 산업계의 핵심조직이다.

# 1. DBCD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DBCDE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정보통신문화부(DCITA)가 2007년 총선의 결과로 변경된 기구이다. 2007년 12월 호주 총선에서 Kevin Rudd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기존의 정책 부서이던 DCITA가 해체되고 DBCDE로 확대 재편되어 융합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가 되었다.

DBCDE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2005년 출범한 정보통신문화부 (DCITA)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통신문화부(DCITA)는 우리나라로 비교하여 볼 때,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통합한 정부부처로 방송·통신, 스 포츠를 비롯한 전 문화 영역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정보통신문화부(DCITA)는 통신국, 방송국, IT와 인터넷국, 정보경제국으 로 구성되어 통신, 방송, IT산업 육성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정보화 에 관한 제반 정책을 수립해 왔다. 또한 통신사업자(CATV, 인터넷전송역무 포함)의 허가, 통신 주파수 계획 수립 및 할당,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을 제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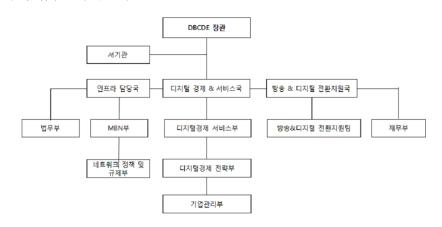
DBCDE는 기존에 정보통신문화부(DCITA)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서 문화와 스포 츠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각각문화부 및 스포츠부로 이관하였다. 현재 ACMA는 정책기능이 없는 규제기관인 관계로 융합정책 수립 기능은 없으며 융합정책은 DBCDE에서 총괄·관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융합정책을 담당하 는 별도의 주무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Digital Switchover) 부서와 광대 역 촉진 부서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 중에 있다. DBCDE는 호 주의 더 나은 미래 및 호주 통신·IT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이다.

# 가. 역할

DBCDE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① 통신·기술에 관련된 소비자 및 산업을 위한 전화, 인터넷,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업무(기금, 정책, 입법, 통계, 심사, 온라인 보안 등), ② 미디어·방송에 관련된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규제 정책 및 입법, ③ 우편에 관련된 호주 우편 행정 및 우정관련 역사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정사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등이 DBCDE의 대표적인 역할이다.

### 나. 주요업무 및 조직도

DBCDE의 경우 장관의 지휘 하에 3인의 차관이 주요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먼저 NBN TF 차관은 NBN TF관련 업무로 규제·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디지털 전환 TF 차관은 디지털 전환정책·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의 관리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방송·지방정책·디지털 경제 차관은 방송 및 콘텐츠·방송산업·콘텐츠 규제·지방정책·디지털 경제·통계 및 기술·국내통신·지역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DBCDE 광대역 인프라, 네트워크 경쟁, 통신네트워크 규제, 우정사업, 통신보안, 네트워크 스펙트럼,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그림 3-6] DBCDE 조직도

자료: DBCDE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DBCDE는 1)통신, 방송, 정보화, 우정 정책 및 규제 수립, 2)주파수 관리, 3)국가 디지털 전략 총괄, 4) 통신미디어청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보면 2009년 6월 1일, 인프라 담당국,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국, 방송과 디지털 전환국 등 3개국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인프라 담당국은 NBN 계획 추진 및 관련 규제 개혁, 통신 인프라 및 주파수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서 비스국은 디지털 경제, 지역 서비스, 컨버전스, ICT 혁신,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과 디지털전환국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2010).

# 2.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Media Authority)

ACMA의 규제 준수 및 집행 활동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1992년 전파법(Radio Communications Act 1992) 과 1993년 전파법 시행령(Radio 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1997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7), 1997년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기준에 관련한 통신 법(Telecommunica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s) Act 1999) 및 2001년 통신법 시행령(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1), 2003년 스팸방지법 (Spam Act 2003), 2006년 스팸전화금지법(Do Not Call Register Act 2006) 및 2001년 인터넷 도박법(Intercatiive Gambling Act 2001)등이 있다. ACMA의 설립목적은 전자 매체가 사회기준을 존중하고 수용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구현, 방송서비스대역을 포함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을 관리, 호주의 통신 및 방송의 이해에 대한 대변 등이다. ACMA의 주요 기능은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산업규제, 주파수 관리, 공정경쟁 감시, 콘텐츠 규제 등이며 별도의 입법권을 갖고 있지는 않 다(정보화진흥원, 2009).

ACMA는 1997년 통신법과 1992년 방송법이외에도 ACMA가 제정한 산업기준 (Industry Standard)이나 서비스제공자규칙(Service Provider Rules)또는 동 위원회에 등록된 산업자율화규약(Industry Codes of Practice)의 위반행위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한다. ACMA에는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659명의 직원이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사무소와 브리즈번 및 호바트 지역사무소에서 근무중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25명이다. ACMA의 직원은 1997년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의 적용을 받는다. ACMA의 규제집행권한의 근거는 다른 국가와비교해 볼 때 현저히 다양하다. 법령뿐만 아니라 산업기준 및 산업자율규약 등도 규제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지향하는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ACMA의 규제집행절차를이해하기 위해서는 ACMA의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주의 방송규제체계는 통신규제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가. 권한

ACMA법 제12조에 의하여 ACMA는 임무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또는 편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다만 부동산이나 사적 재산 여기에는 제소 권한(right to sue)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무장관은 ACMA의 임무와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ACMA에 행정지도 (directions)를 할 수 있다. 다만 주무장관이 방송 콘텐츠 및 데이터캐스팅 임무나 이러한 임무에 관련된 ACMA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의하여 특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성질의 행정지도만을 할 수 있다 주무장관의 행정지도는 관보에반드시 게재되어야 하며 ACMA는 행정지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주무장관의 행정지도와 더불어 ACMA의 권한 행사에 의회도 개입할 수 있다. 다수의 ACMA의 결정이 의회에 의해 불허되곤 한다. 그러나 ACMA는 ACMA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지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ACMA는 방송, 콘텐츠 및 데이터캐스팅 관련 임무를 호주와 뉴질랜

드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in Services Protocol 상의 호주의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호주의 통신규제체계는 통신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호주 통신 산업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신 산업의 자율규제가 접근 기술 기준 상호접속 기준 소비 자 및 소비자 서비스 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권장된다. ACMA와 ACCC등 등 관련 규제기관은 통신 산업의 자율규제가 특정한 사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나. 임무

ACMA의 2편 2장에 의하면, ACMA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 영역, 통신 관련임무, 전파관리 임무, 방송 컨텐츠 데이터캐스팅 관련임무 및 기타임무로 구분된다. ACMA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 1) 통신과 방송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및 데이터캐스팅 규제
- 2) 전파면허제도를 통한 주파수 대역 접근 관리 및 가격 기반 할당 방식을 통한 주파수 수요 경쟁의 해결
- 3) 방송서비스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분할 계획 및 방송면허제도를 통한 주파 수 접근 관리
  - 4) 법령 면허조건 자율규약 기준 서비스 보장 및 기타 안전조치기준의 준수규제
  - 5) 현안 해결을 위한 산업의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방안의 모색과 촉진
  - 6) 기준이나 서비스제공자규칙의 방식으로 필요한 법령 제정
- 7) 통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촉진
  - 8) 통신 산업에 관련 사안의 보고
  - 9) 통신 산업과 관련된 호주의 이해를 국제사회에 표명
  - 10)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 제공.

# 44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다. 조직구조

ACMA법 제 3편에서는 ACMA 조직의 구조와 구성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CMA는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상임위원회(Authority), 집행부(Divisions),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및소비자자문포럼(Consumer Consulative Forum)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ACMA상임위원회

ACMA의 상임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Chair), 부위원장(Deputy Chair), 그리고 7명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1명 이상의 위원 (Members)들로 구성된다. (ACMA법 제 19조). 현재 (2011년 12월 기준) 상임위원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1명의 비상임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위원(Members)

ACMA의 위원은 크게 위원(Members)과 준위원(Associate Members) 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상임 위원(full-time) 또는 상임준위원과 비상임(part-time) 위원 또는 비상임준위원으로 구분된다. 임원의 임명은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서면으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으로 임명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ACMA법은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격상실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 위원의 임기는 총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임할수 있다. 다만, 위원이특정 대국민 조사(inquiry)나 사건조사(investigation), 청문(hearing)을 진행하고 있는경우에는 장관이 서면으로 당해 대국민 조사나 사건조사,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당위임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3) 준위원(Associate Member)

준위원은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주무장관에 의해 서면으로 임명된 위원을 말한다. 준위원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무장관이 업무수행에 필요 한 인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무장관은 준위원을 상임 또는 비상임직으 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장에는 각 위원의 업무 예컨대 대국민 조사 사건 조사 청 문 또는 ACMA의 임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에 필요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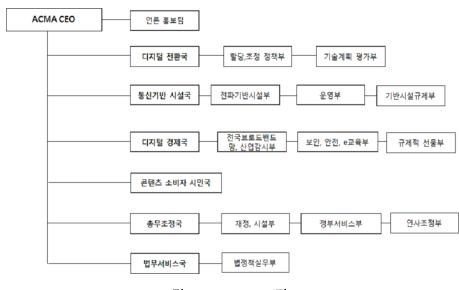
# 4) 의사결정의 구조

ACMA 상임위원회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 다.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 위원장은 언제든지 회의 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무장관이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라. 조직구성

디지털 전환국 산하의 주요 기능담당부서는 기술계획·평가(Technical planning and evaluation) 부 와 할당·조정 정책부(Allocation, Coordination and Policy)이며, 통신기 반시설국의 경우에는 전파기반시설부(Spectrum Infrastructure)와 운영부(Operations) 및 기반시설규제부(Infrastructure Regulation)이다. 최근 통신기반시설국에는 프로젝 트사업시행그룹(Project Enterprise Implementation Group)이 신설되었다.

#### 46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3-7] ACMA 조직도

자료: ACMA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디지털 경제국에는 전국브로드밴드망·산업감시부(NBN and Industry Monitoring), 보안, 안전, E교육부가 있으며, 콘텐츠, 소비자, 시민국에는 시민 커뮤니티부(Citizen and Community), 콘텐츠 소비자부(Content and consumer) 및 원하지 않은 통신서비스부(Unsolicited Communications)가 있다. 콘텐츠 소비자부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재연결을 위한 대국민 조사 전담반(Reconnecting the consumer Inquiry Taskforce)이 꾸려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총무 조정국은 ACMA의 운영업무를 총괄담당하며 주요 기능부서로는 재정 시설부(Finance and Facilities), 정보 서비스부(Information Service)는 ACMA의 업무 중 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주로 ACMA 내부의 법률자문과 위원회의 각종 결정에 법적 타당성과 근거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ACMA의 각종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ACMA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ACMA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법정책실무부(Legal Policy and Practice)이 주 기능부서이다.

ACMA의 일상 업무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6개의 국을 담당하 는 국장(General Manager) 6명과 각 국에 속해있는 15개부의 장(Executive Manager) 15명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 운영된다 국장이 담당하는 6개의 국은 아래와 같다

- 디지털 전환국 (Digital Transition)
- 통신기반시설국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디지털 경제국 (Digital Economy)
- 콘텐츠, 소비자, 시민국 (Content, Consumer and citizen)
- 총무조정국 (Corporate services and coordination)
- 법무서비스국 (Legal services)

조직구성 4개국으로 구성되나 업무상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한다.

- Input to Industry : 주파수 감독, 사업자 면허, 기술표준 분야 담당
- Industry Output : 방송, 통신,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감시 담당

# 3.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는 1995년 거래관행위원회(Trade Practice Commission)와 가격규제위원회 (Price Surveillance Authority)가 통합된 기구이다. ACCC는 독립법정기구로 1974년 거래관행법 (현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 및 관련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설치되었 다.

# 가. 역할

ACCC는 호주 통신부문의 경제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 ( Competetion and consumer Act 2010) Part XIB 및 Part XIC에 의하여 산업의 고유 한 경쟁과 접근규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규정들은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 적인 행위와 현재 Telstra가 유선망을 통해 제공하는 필수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자들의 접근을 다룬다. ACCC는 경쟁 및 소비자법 이외에도 1997년 통신법, 1999년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기준에 관한 통신법, 1992년 전파법,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통신법에서는 ACCC에게 ACMA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산업기준, 번호배분기준, 전자주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ACMA에 자문을 하고 통신사 업자나 콘텐츠제공자, 통신산업 및 ACCC의 통신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정문제에 대 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ACMA가 의뢰한 통신문제를 조하고 통신사업자간의 접근과 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ACMA가 시설설치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자문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ACCC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관련한 업무, 물품과 서비스의 개별 공 급자간 분쟁의 중재, 개별 사업자의 행위 승인, 법적 자문의 제공, 노사문제의 해결, 사업자 등록과 같은 업무는 하지 않는다.

#### 나. 업무

ACCC가 통신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동 통신 접근 서비스(mobile terminating access service), 회선 공유 서비스 (line sharing service), 무 조건적 지역 전화 서비스 (unconditioned local loop service), 국내전송용량 서비스 (domestic transmission capacity service), 디지털 데이터 접근 서비스 (digital data access service), PSTN 발신접근서비스 및 착신접근서비스 (PSTN originating access service and terminating access service), 지역 통신서비스 (local carriage service), 회선 임대 서비스 (도매) (line rental service(wholesale)), 1997 년 통신법 - 설비 접근 (Telecommunications ACT 1997 Facilities Access)

ACCC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로는 1996년 항공법(Airports Act 1996), 1989년 호주 우편회사법(Australian Postal Corporation Act 1989), 1992년 방송 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1998년 가스파이프라인법(Gas Pipeline Access Act 1998), 1999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1999) 등이 있다. ACCC는 무역관행법의 권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임위원들의 공식모임을 통해 운영된다. 이와 더 불어 5개의 사안별 위원회가 매주 각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절차를 조율하며 6개의 하부위원회는 구체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4. 기타 관련기관

# 가. 통신협회(Communication Alliance LTD.)

통신협회는 호주 통신산업포럼과 서비스제공사연합사의 통합으로 탄생한 최대 통신사업자단체이다. 통신협회의 주요 임부는 기술, 운영, 소비자에 관한 산업자율 규약 및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통신협회는 ACIF의 자율규약의 집행 및 준수 체 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망사업자, 통신서비스사업자, 장치 판매자, 산 업협회, 이용자/소비자 단체 등 누구나 통신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방송통신위 원회, 2011).

# 나. 호주통신접근포럼(Australian Communications Access Forum)

ACAF는 ACCC가 승인한 산업자율규제기관이다. ACAF는 통신 접근체제의 대상 이 되는 서비스를 권고하고, 접근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망소유통신사업 자와 통신사업자는 ACAF에 가입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2011).

### 다. 통신산업옴부즈만(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TIO는 독립적인 분쟁해결 포럼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가정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제기하는 불만 민원 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TIO는 민원의 상대방이 된 사 업자에게 사건 당 요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충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1).

# 제4절 프랑스

프랑스의 방송통신산업은 전통적으로 공역무(service public)법제의 규율을 받아왔 다. 공역무법제는 일반적으로 공익목적의 추구와 독점을 결합하는 경향을 보여 왔 다. 공역무의 제공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공익추구의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르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과 유럽 법의 영향으로 인해 방송통신 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공역무법제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방송통신행정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과 공역무법제 유지를 통한 공익성의 조화를 시도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일본, 영국이 독립위원회 형이든, 정부 부처형이 든 모두 규제기관의 단일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는 통신과 방송에 있어 서 행정은 물론 정책과 규제체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담당기구도 분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및 규제기능의 분리는 정치적인 행위인 정책수립과정 과 행정행위인 규제행위를 철저히 구분해서 통신과 방송이라는 심각한 경쟁분야에 서 시장조절을 위한 공권력이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방송통신위 원회b, 2010). 또한 '업무 분장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방송통신행정의 다차원적·다층적 분업 체계에서 비롯된다.

프랑스는 일차적으로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전자는 행정부처가 후자는 독립적 행정기구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04 년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응하여 '전자통신과 방송통신역무에 관한 법률 (la Loi relative aux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communication audiovisuelle)'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la Loi pour la confiance dans l'economie numerique)'을 제정하여 기존의 '우편통신법전'(현우편전자통신법전,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이하 CPCE 또는 '우편전자통신법')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la Loi relativea la liberte de communication, 이하 '방 송법')을 개정하였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따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영역 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송과 통신이 별도의 규제기관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 고 있다. 규제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관련 규제와 경쟁규제, 이용자보호에 관한규제를 분리하여 각각 고유한 규제기관에서 담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업체계를 통해 프랑스는 방송통신행정의 전문성과 실효 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 집행에 대 한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법집행절차의 특징은 유럽인권협약(ECHR) 제6 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fair trial 원칙)를 구현하기 위한 "철저한 대심주 의의 보장"과 "영업비밀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집행절차의 객관 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CSA와 ART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라 할 수 있으나 그 성격상 각각 MCC와 MEFI 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타 중요한 기구로 국립주파수관리소가 있다. CSA는 시청각 최고 위원회는 지상파 주파수 방송 주파 수 허가에 관한 규제만 유지할 뿐 그 외 모든 전자 커뮤니케이션 망에 대한 규제권 은 ARCEP가 갖는다.

#### 1. ARCEP (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프랑스의 전자통신우편규제청(Autorite de regulation des 통신규제기구인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이하 'ARCEP')은 1996년 경쟁이 도입된 프랑스 통신 부문을 규율하고 경쟁도입으로 인해 형성된 통신시장을 규제하기 위하 여 우편전자통신법 제36조에 의하여 1997년 1월 5일 통신규제청(Autorite de ré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독립행정기관이다) (ARCEP,2010). ART(현 ARCEP)는 프랑스 최초의 행정, 입법,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행정기관로도 의의를 가진다. ARCEP의 권한, 역할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우편전자통신법(CPCE)에서 규정하고 있다. ART의 권한은 다수의 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04년 7월 9일 법120)은 2002년 전자통신 규제에 관한 유럽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통해 ART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2005년 우 편규제에 관한 법률은 통신에 국한되었던 ART의 관할권을 우편 부문까지 확장하였 으며, ART(통신규제청)의 명칭도 우편을 포함한 ARCEP(전자통신우편규제청)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RCEP의 주요 역할은 전자통신시장의 공정하고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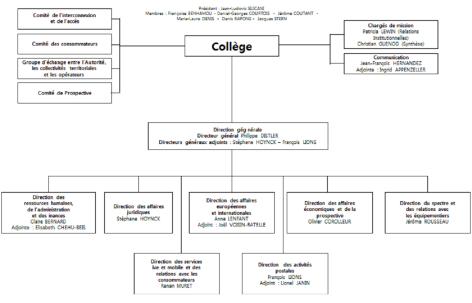
과적인 경쟁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 가. 조직구성

ARCEP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College), 사무총장(Directeur general) 및 8개의 역무국(Directorates)으로 구성된다ARCEP 조직도 참조). 상임위원회에는 4개의 자문위원회(상호접속과 액세스 위원회, 소비자 위원회, ARCEP-지역당국-사업자 관계 위원회, 미래계획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외홍보담당관 2명, 그리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보좌관 2명이 있다. 사무총장은 ARCEP의 실질적인 활동을 총괄하는데, 부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보좌관 1명이 있다.

# 나. 업무

ARCEP의 규제업무는 총 8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며 사무총장의 관리하에 각 역무 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역무 분야를 살펴보면 인사·행정·재무, 법무, 유럽 및 국제업무, 경제 및 미래계획, 주파수규제 및 장비 제조업자 관계, 브로드밴드·초고속 브로드밴드 시장 및 지역당국 관계, 유무선 시장 및 소비자 관계, 우편규제 등이다. 이중 법무국은 ARCEP의 법집행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RCEP의 상임위원회는 전자통신 분야, 우편 분야, 국토경제 분야에서 경제적,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근거로 임명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의 데크레로 임명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상·하원의장이 각각 2명씩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데크레로 임명된 위원들은 매 2년 마다 3분의 1씩 개임된다. 위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중임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65세가 넘은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우편전자통신법 제130조) (방송통신위원회, 2010).



[그림 3-8] ARCEP 조직도

자료: ARCEP 홈페이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 통상 한 주에 한 번씩 소집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 우 아무 때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 중 2명이 소집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다(ARCEP 내부규칙 제2조). 상임위원회 회의 의 제는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의제와 사무총장이 작성한 의결안은 회의소집일 2일 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위원은 누구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소집일 3일 전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위하여 정보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충분 한 자료를 획득할 때까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다(내부 규칙 제3조). 심의 안건은 위원 뿐 아니라 사무총장, 각 업무국장 및 기타 위원회직원 등이 설명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지정된 직원은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내부규칙 제4조) (방송통신위원회, 2010)

법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의 의제를 결정하고, 위원회의결안을 작성하며,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심의과정에는 불참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록에는 논의된 안건, 심의결과, 출석위원의 이름 등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이나 의견을 첨부한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의견은 위원장이 서명한다(내부규칙 제6조) (방송통신위원회, 2010).

법무국의 역할은 ARCEP의 활동 중 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특히, ARCEP의 결정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분쟁해결절차와 제재처분절차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보장한다. 소송 사건을 담당하며,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위하여 법안과 위원회의 의견안을 작성한다.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법적 자문과 지원활동을 한다.

### 2. 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프랑스의 방송규제기구인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는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a la liberte, 이하 '방송법')'에 의거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기 위해 1989년 1월 17일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규제기구이다. CSA는 방송규제기구로서는 프랑스의 세 번째 규제기관이다. 이에 앞서 1982년 7월 29일의 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고 등청(Haute Autorite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과 1986년 9월 30일의 법에 의해 설립된 통신과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e)가 있었다.

#### 가. 임무

CSA의 주요 임무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의 형성을 도모하며, 방송의 평등 원칙과 공공방송 부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내 방송물 제작과 생산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및 불어와 프

랑스 문화의 보호 및 고양을 감독하는 것이다.

# 나. 권한

CSA 역시 통신규제기구인 ARCEP과 유사하게 규제권한, 규칙제정권한 및 준사법 권을 가진다. 방송산업에 민영방송체계가 도입 • 발전되면서 법률이 새로 제 • 개정 되었고, 그 때마다 CSA의 권한은 확대되었다. 특히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는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2004년에는 1986년 9월 30 일의 법률의 개정으로 CSA에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해결권한이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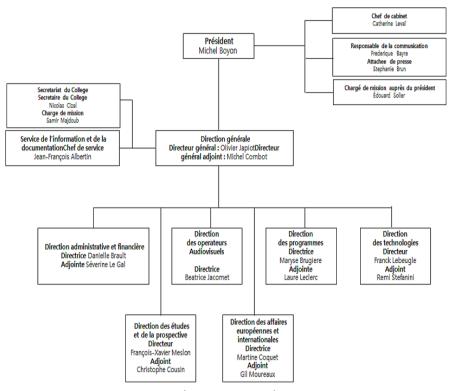
세부적으로 CSA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임명권: 1) 텔레비전 및 라디오 공영방송사 사장임명, 2) France2, France3의 이사 회 임원의 일부임명 3) 국립시청각연구소의 이사회 임원 4)기타 문화, 방송, 통신 관 련기구에 대한 임원임명
  - 제재권: 1) 형사고발, 행정체제
  - 방송관련규제: 민영방송허가, 규제, 제재권 (새로운 임무부여, 쿼터조정)
  - 정부부처 및 국회에 대한 자문

#### 다. 조직구성

CSA는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이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College), 사무 총장(Directeur general) 및 8개의 역무국(Directorates)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비서실, 대외홍보담당실 및 위원장 보좌관실이 있다. 사무총장은 CSA의 실질 적인 활동을 총괄하는데, 위원회 사무국과 정보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CSA의 규 제업무는 총 7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며 사무총장의 관리하에 각 역무국에서 담당하 고 있다. 역무 분야를 살펴보면 행정·재무, 법무,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기술, 연구 및 미래, 유럽 및 국제업무 등이다. 이 중 법무국은 ARCEP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 집행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약 300명의 직원이 파리에 위치한 CSA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CSA의 상임위원회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임명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나 직무수행은 가능하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 마다 3분의 1을 교체한다. 위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중임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임이 가능하다(방송법 제4조).



[그림 3-9] CSA 조직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별정직으로 국가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최대 1년 동안 보수를 받게 된다. 다만 위원당사

자가 보수를 받는 활동을 재개하거나 연금을 수급하거나 공무원 또는 법관으로 복 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위원들은 재임기간 및 직무 정지일로부터 1년 간 위원 직무 수행 시 제기되었거나, 지득하였거나 또는 그의 직무수행 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조).

CSA의 상임위원회도 위원장에 의해 통상 한 주에 한 번씩 소집되며, ARCEP의 상임위원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CSA의 주요 업무를 18개의 실무그룹(groupe de travail)과 1개의 위원회(commission), 5개의 임무(mission)로 구분하여 각자 소관담당부서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CSA는 이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는 목적이 총회 시 위원들 이 담당 분야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조사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1) 의사결정 구조

CSA는 6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 진다(방송법 제4조).

# 2) 법무국의 역할

CSA의 법무국은 매체에 상관없이 방송사업자에 관한 모든 법적 사안을 다룬다. 상임위원회의 결정 및 의견과 관련된 법해석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위원회의 결정 문곧, 권고, 임명, 의견, 사법당국의 제소, 이행고지 및 제재처분 등을 작성한다. 또 한 법률안 및 정부의 행정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관리(follow-up)한다. 아울러 EU법의 발전을 고려하여 또는 관련 주제에 대한 부서 간의 회의에서 CSA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법무국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다. 한편, ARCEP 의 경우와는 달리 CSA에서 법집행절차의 감독과 운영은 사무총장이 담당한다.

# 3. MCC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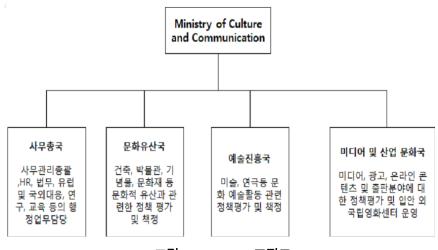
MCC는 1959년 설립된 문화부에서 발전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문화부가 독립적인 정부부처로 출범한 최초의 사례이다. 설립 당시 교육부로부터 인물·예술 지원, 건축 및 문서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산업통상부로부터는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를 이관 받았다. 1959년부터 다수의 조직 변경과 명칭 변경을 거쳐 1997년부터 현재의 MCC로 유지되고 있으며, 2009년 출범 50 주년을 맞이하였다.

# 가. 비전

프랑스 MCC는 건축, 기념물, 문화재 등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및 미디어 관련 문화 콘텐츠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古) 문화재 외에 영상 예술, 댄스, 퍼포밍, 음악, 연극, 문학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공공 문화 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는 공영 방송에 대한 사업 운영 규제 제정, 일부 경영위원 임명, 연차 예산 책정 등의 업무 등이 있다. MCC는 방송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평의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와 국립영화센터의 의견을 받아 정책 입안을 진행하고 MCC 장관은 미디어 및 산업문화국(La Direction Gééale des Mé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DGMIC)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받아 정책 입안 및 정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0] MCC 조직도

### 자료:MCC홈페이지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2010년 1월 13일 향상된 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관리 행정을 위해 단순화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편 으로 그동안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부국이 크게 4개국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중 앙 집권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4. MINEFI (Ministè de l'É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1997년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Dominique Strauss Khan) 장관이 취임하면서 당시 일본의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와 같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MEFI(Ministè de l'Énomie et des Finances)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식 명칭은 MINEFI(Ministè de l'É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로 하였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장관의 목적은 프랑스의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방법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부(machine state)'를 구축이었다. 이후 2007년 6월 Finance를 분 리하고 고용 부문을 결합하여 MINEFE (Ministè de l'Énomie, de l'Industrie et de

### 60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l'Emploi)로 개편되었다. 또한 2010년 11월 14일 다시 Finance 부문을 편입, 조정하여 MINEFI(Ministè de l'É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로 조직을 재개편 되었다.

# 가. 주요업무

경제재정산업부의 주요 업무를 보면 1)세금 정책국과 예산부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해 세법을 입안 2)프랑스 예산, 경제, 재정 시스템 감독 3)관광, 중소기업,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통신 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의 감독, 정책 총괄 4)고용 정책과 교육 감독하고 있다



[그림 3-11] MINEFI 조직도

# 제5절 캐나다

캐나다의 방송통신규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규제와는 규제기관 및 규제의 구조 와 형식적·절차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심판관리 제도는 미국의 제도에 비해 종류, 절차 및 방식 등이 덜 세분화되어 있으며, 단순하 다.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시장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추측된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 및 정책적 관점에서 '문화 정체성 및 다원성보 호 증진 강조'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이유로 '다층적으로 이원화된 규제' 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방송과 통신을 서비스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하는 기관도 각각 다르다. 방송·통신서비스는 캐나다방송통 신위원회(Canada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CRTC' 내지 '위원회'라고 한다.)가 규제·감독하고, 전파관리 등 기술적인 사항은 캐나다 산 업부(Industry Canada)에서 관리한다. 둘째,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각각 개 별 법률, 방송법과 통신법에 의해 규율된다. 각 산업별로 별도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 1. CTR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and Commission)는 연방독립규제기관으로서, 캐나다의 방송과 통신 시스템이 공익에 부 합하도록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CRTC는 1932년 설치된 캐나다 라디오방송 위원회(Canadian Radio Broadcasting Commission, 이하 'CRBC')에서 유래하였다. CRBC는 전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국이자 동시에 캐나다의 모든 방송을 규제하는 연방규제기관이었다. 당시의 방송규제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 장소 및 송 출력과 전국 및 지역 프로그램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 등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1968 년 설치된 캐나다 방송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Commission)는 CRBC의 이

러한 규제 기능을 대체하였는데 이 기관이 CRTC의 전신이다. 초기의 통신규제는 철도법(Railway Act)에 의해 설치된 철도위원회(Board of Railway Commissioners)의 관할이었다. 당시 전화와 전신사업자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철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전화 서비스 이용료 승인, 전화 시스템의 상호접속 명령, 고속도로나 공공장소에 전화선 설치 등을 규율하였다. 1976년 캐나다 교통위원회(Canadian Transport Commission)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이전받으면서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해 현재의 CRTC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CRTC의 관할권이 특히, 통신에 대한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CRTC는 통신 영역에서 민영 통신사업자만을 규제하였으며, 공영 통신사업자는 州의 규제당국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르러 법원들이 통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이부문에 대한 관할권이 CRTC로 이전되었다.

CRTC의 방송통신규제는 방송법과 통신법, 벨 캐나다법에 근거하고 있다. CRTC는 캐나다 방송 시스템이 문화적 창의성과 역량, 이원적 언어, 문화적 다원성, 고용기회 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권한 및 임무

CRTC의 주요 권한과 임무는 캐나다 내 방송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규제·감독, 방송과 통신사업의 면허 발급 및 갱신·수정·취소,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 및 소유권 규제, 방송과 통신 규제를 위한 규정(regulation) 제정, 방송통신관련 분쟁사건의 조사·심리·결정 및 집행,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집행 등이고, 법률 제정 권한은 없으나, 의회의 법률 심사 시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방송 사업자로부터 면허료 징수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 나. 규제대상

CRTC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 서비스와 통신서비스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문, 잡지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산업부가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전화 신호 방송(call signs), 주파수 관리 및 주파수 간섭 등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CRTC는 각각 다른 법제 하에서 방송서비스 와 통신서비스를 관리한다. 이는 통신규제는 방송규제와 매우 다르다고 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오늘날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가 추진되면서 특정 서비스가 통신에 해 당하는지 방송에 해당하는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최근, 이동 전화 이용 료, 이동 전화 서비스의 질 및 이동전화사업자의 사업관행,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의 질과 내용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동전화에 대한 규제 완화는 CRTC의 행정 자제(forbearance)를 규정한 통신법상의 특별한 조문에 의해서 이뤄진 조치이 다. CRTC는 또한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매사업자와 인터넷 접근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춘 케이블 및 전화사업자와의 관계도 규제하고 있다.

#### 다. 조직구성

CRTC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기업 서비스 및 운영국과 법 무국 그리고 방송사무팀과 통신사무팀, 정책 개발 및 연구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및 의회 관련 업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RTC의 전체직원은 466명이며, 직원의 분포도를 보면, 전체직원의 4%가 위원회, 27%가 기업 서비스 및 운영국, 6%가 법무 국, 20% 방송사무팀, 20% 통신사무팀, 13% 정책 개발 및 연구팀, 10%가 전략적 커 뮤니케이션 및 의회팀에 속해 있다.

현재 CRTC의 조직구성은 2005년 당시 조직구성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상당한 조직개편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이용자 보호국에 해당 하는 소비자 서비스부서가 없어진 것이다. CRTC는 대부분의 소비자 업무를 일차적 으로 CBSC, ASC 및 CCTS 등 자율규제기관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여과장치를 통해 소비자 업무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경우, CRTC는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하지만,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일차적으로 방송사업자나 자율 규제기관에 맡겨진다. 만약 소비자가 이러한 CRTC 직원이나 CBSC나 ASC의 응답 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CRTC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CRTC는 소비자

가 방송사업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당해 방송사업자의 사업면허 갱신에 관한 공 개 청문 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가인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를 권장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판매, 통신서비스의 질, 통신서비스의 접근성, 통신요금, 통신서비스의 중단(disconnect) 또는 재연결(reconnect) 및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 관한 기타 사안에 대하여 CRTC에 직접 재정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은 더이상 CRTC의 규제대상이 아니며, 많은 부분의 통신 관련 소비자 업무가 통신 서비스불만처리위원회(CCTS)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RTC는 최대 13인의 상임위원과 최대 6인의 지역(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이는 갱신될 수 있다.

#### 2. Industry Canada

캐나다 산업부는 주파수 관리 등 통신과 방송의 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법(Department of Industry Act)이 그 근거법으로 제4조 제1항 제k호에 의하여 산업부 장관의 권한, 의무 및 임무는 ① 캐나다 정부의 부처, 위원회및 기관을 위한 통신 서비스의 계획 및 조정과 ② 주파수 관리 및 방송의 기술적인부분을 제외한 방송을 제외한 통신에 관하여 연방의회의 관할권이 미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임무

통신과 관련하여 산업부의 목적은 정책 및 규제 권한과 시장과 산업의 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캐나다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을 사용하고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통신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과 통신법은 다음의 임무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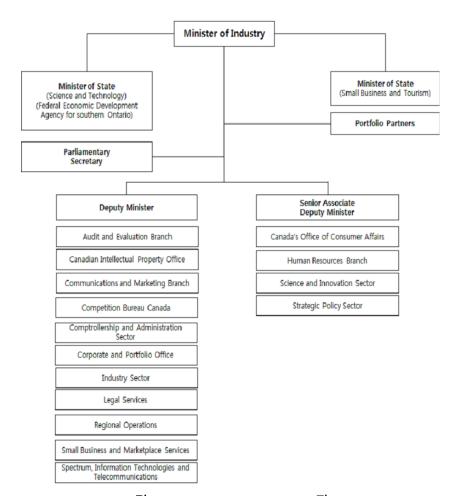
부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 1) 주파수 면허의 발급 및 개정
- : 무선 기기와 관련된 무선 면허, 지정된 주파수 면허
- 2) 인증성의 발급 및 개정
- : 무선 기기에 관한 방송 인증서, 무선 운용(radio operation) 인증서, 무선기기, 간 섭발생장치 (interference causing equipment), 무선감응장치(radio-sensitive equipment) 에 관한 기술허가인증서(technical acceptance certificate) 등
  - 3) 무선 기기 등에 관한 기술적 요건과 기술 표준 설정 및 검사
  - 4) 주파수 분배와 할당 계획
- 5) 무선국, 안테나 설치 장소, 전신주 및 기타 안테나 보조 건축물의 설치 장소 승 인
  - 6) 유해한 간섭의 존재 여부 결정, 결정에 따른 명령 조치 및 집행

#### 나. 조직구성

캐나다 산업부 내 주파수, 정보 통신 및 통신 부문(Spectrum,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이하 'SITT'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있 다. SITT는 아래와 같이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 1) 전자상거래분과(ECOM)
- 2) 정보 및 커뮤니테이션 기술 분과(ICT)
- 3) 무선통신 및 방송 규제 분과(DGRB)
- 4) 주파수 엔지니어링 분과(DGSE)
- 5) 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 서비스 분과 (PCMS)
- 6)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센터(CRC)



[그림 3-12] Ministry of Industry 조직도

## 3. 기타 관련기관

CBSC와 CCTS는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비록 사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는 하나 CRTC의 사건처리절차 유사한 준사법적 인 절차를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 가. CBSC (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민간 방송사업자로 구성된 캐나다 방송사업자 협회(CAB)에 의해 창설된 독립적 인 비정부 기관(CRTC의 승인)이다. 캐나다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준 관리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율규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정한 코드 체계를 자발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캐나다 방송기준회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캐나다 방송 시스 템에 특정한 방송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국민에게 이러한 방송 기준과 자율 규제 시스템의 존재를 알리며 이러한 방송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만 해 소 방법 제공하고, 효과적인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청취자와 시청자가 방송사업자 의 프로그램에 대해 신고하고, 이를 사업자와 신고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하고 불만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사려 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국민이 이러한 결정에 접근하도록 하여,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방송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국민과 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사 회적 추세(코드의 제·개정 및 관리)를 알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 제안하는 것이다.

#### - 조직구성

CBCS의 조직은 전국위원장(Natioanl Chair)와 집행이사국 및 사무국, 전국/지역패 널과, 전국집행이사회(National Executive)로 구성된다. 전국위원장은 사무국, 전국 집행이사회 및 전국/지역 패널의 구성원이자 수반이다. 집행이사국과 사무국은 신 고 접수 및 응답, 방송사업자의 대답 요구, 정보 요청 대응, 심결 결정문을 작성, 연 간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전국패널은 두 개의 패널로 구성된다. 하나는 전문 서비스를 위한 패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TV를 위한 패널이다. 이 패널들은 전국 프로그램에 관한 신고를 결정한다. 패널은 3인의 국민 대표자, 3인의 산업 대표자 및 전국위원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5개의 지역패널(대서양 인접 주, 퀘벡, 온타리오, 중서부 지역 및 브리 티쉬 콜롬비아)이 있으며, 이 패널은 3인의 국민 대표자, 3인의 산업 대표자로 구성 되어 있다.

전국집행이사회는 13인(각 지역 패널의 의장 및 부의장 10인, 전국 패널의 부의장 3인)과 전국 의장 1인, 총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CBSC의 이사회로 신고에 따른 Code 개정,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자문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 나. CCTS (Commissioner for Complain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CCTS는 2007년 CRTC의 승인을 받아 창설된 비영리 기업으로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직접 접촉한 후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CCTS에 신고를 하면 심결을 통해 불만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수입이 \$10 million을 초과하는 캐나다 통신사업자나 재판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CCTS의 회원이다. CCTS 멤버쉽은 자발적이며 캐나다에서 소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다. CCTS는 회원들에 의해 재정이 공급되며 정부기관이 아닌 자율 규제기관이라 할 수 있다. CCTS는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평가하며, 불만신고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을 돕거나, 권고 내지 결정을 공평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내려야 한다.

# - 조직구성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와 위원(Commissioner) 내지 최고경영자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4인의 독립 이사(이 중 1인은 소비자 그룹에 의해 지명되어야 함)와 3인의 산업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에는 반드시 다수의 독립 이사와 독립 위원장(독립 이사중 1인이 독립 이사들에 의해 지명됨)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 방송통신 규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규제의 단순화이다. 캐나다는 규제 자제 제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실제 이동통신 분야에서 이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자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단순화가 심판관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자제제도의 장단점과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제6절 소결론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광대역화 등이 가져온 융합 시대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보 통신 및 미디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복지의 구현을 위해 법제 정비나 기구 개편 등 을 통해 융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융합과 관련한 법제 정비나 기구 개편의 방향 은 크게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확보와 소비 자 복지의 극대화 등에 맞춰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삼아 2008년 2월 29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3인)은 차관급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 방통위의 3년의 업적을 공 영방송은 관영방송으로의 격변과 인터넷 정보화의 미 집중으로 비판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ICT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ICT분야 법령과 산하기관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법령으로는 ICT 생태계의 통합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서비스 규제 한계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산하기관은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추진과 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집행(regulator)과 정책(policy-making)을 어떠한 기구 형태로 둘 것인가는 규제 기구 통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크게 규제(regulation)와 정책 (policy-making)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원 또는 진흥은 크게 정책 기 능 속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정책이라는 용어는 '정책 수립'(입법기능, 지원·진흥정 책 기능 포함)으로, 규제라는 용어는'규제집행'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해외 ICT 기관은 정책수립기능과 규제 집행 기능을 단일기구로 하는 형태와 분리 하는 형태로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각 나라별로 방송 · 통신 분야에 정책과 규제가 단일시스템과 복합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

# 1. 단일규제시스템

첫째는 정책과 규제 기능을 단일 정부 부처로 통합하는 것으로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 총무성이 규제와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행정부처로의 기구통합은 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융합을 촉진하는 데 기능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 특정 부처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통합 대상 기존의 규제기구나 사업자들의 저항이 문제될 수있다. 둘째는 정책과 규제 기능을 통합하되, 정부 부처가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를설치하는 것으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와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1934년 설립된 FCC는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 방송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총괄한다. 미국의 FCC와 같이 정책과 규제를통합적인 규제위원회가 관할하게 될 경우, 산업정책 기능보다는 규제 기능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한 위원회의 위상을 합의제 위원회로 할 경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

## 2. 복합규제시스템

첫째,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은 통합된 독임제 정부 행정부처에서 수행하고 규제는 위원회 형태의 통합 규제기구에서 담당하는 모델로 이에 해당되는 국가로 호주가 있다. 호주의 경우 방송통신 관련 정책은 2007년 12월 기존의 DCITA에서 개편된 DBCDE에서 담당하고, 규제는 ACMA에서 담당한다. 둘째,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는데 규제는 위원회 형태의 통합 규제기구에서 담당하고 방송과 통신 정책은 분리하여 각각 해당 정부 부처가 이원화된 형태로 담당하는 모델로 영국,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은 각각 분리된 정부 부처가 전담하고 규제는 통합위원회가 담당하는 대표적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의 경우 방송 관련 정책은 DCMS, 통신

관련 정책은 DTI에서 각각 담당하고, 규제업무는 Ofcom에서 전담하고 있다. 캐나다 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은 Industry Canada와 규제 업무는 CRTC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방송과 통신 정책을 분리하여 두 개의 정부 부처에서 각각 분리 관할하고 규제기구는 단일 규제기구로 통합하는 경우, 통합에 따르는 부작용 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이 가장 적게 일어난다는 장점은 있으나, 융합 환경에 적절한 정책 수립이 어렵고 여전히 정책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융 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규제기관과 두 개의 정책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프랑스는 방송과 통신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 다. 방송정책은 MCC, 통신정책은 MINEFI가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규제는 CSA,통 신규제는 ARCEP가 담당하고 있다.

<표 3-1> 해외 방송정책 체제 및 규제기관

유형	국가	관련분야		
πδ		정책수립 및 집행	규제	
단일규제체제	미국	FCC	FCC	
	호주	DBCDE	ACMA	
복합규제체제	영국	DCMS	Ofcom	
극합 II 세세세	캐나다	Industry Canada	CRTC	
	프랑스	MCC	CSA	

# <표 3-2> 해외 통신정책 체제 및 규제기관

 유형	77	관련분야		
π8	국가	정책수립 및 집행	규제	
단일규제체제	미국	FCC	FCC	
	호주	DBCDE	ACMA, ACCC	
복합규제체제	영국	DTI	Ofcom	
득합ㅠ세세세	캐나다	Industry Canada	CRTC	
	프랑스	MINEFI	ARCEP	

# 제 4 장 방송통신법제

# 제1절 해외 방송통신법제

미국은 방송과 통신을 단일법제를 통해 규율하는 법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방 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규제도 FCC가 일원화하여 전담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텔 레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전화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을 융합의 흐름을 법제도에 받아 들여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케이블 TV 서비스 간 상호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미디어 시장에 전반적으로 경쟁을 도입하 였다(이기현, 정윤식, 2006).

방송과 통신이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반면에, 공중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방송서 비스, 케이블 서비스, DBS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서 비스가 전송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수직적 규율의 형태를 보 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음성서비스가 유선망에서 제공되는 경우, 텔레커뮤니케이션 법 Title II의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 규제를 적용하고, 무선망에 의해 제공 되는 경우 Title III의 무선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사한 서비스 에 대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인터넷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 전화회사가 제공하는 DSL 인터넷 서비스는 규제를 받는 통신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기존 전화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VoIP는 정보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단일 법체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통 신-방송의 구분, 서비스-전송기술 영역을 분리하는 규제의 분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미디어생태계와 융합 환경에서 등장할 신규서비스가 어떻게 분류되고 규율될 지에 대해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영국의 방송통신 분야는 1984년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와 1949년 무선통신법 (Wireless Telegraph Act)에 의해 각 각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규제되어 왔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of 2003) 제정을 계기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적합한 통 합적인 규제체제를 수립하였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거하여 모든 서비스는 전자통신 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콘텐츠 서비스 (content service), 방송서비스 (broadcasting service)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며 신호 전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콘텐츠 서비스는 전자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로 구성된 자료의 제공 또는 이러한 자료의 편집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방송 서비스는 영국 내 불특 정다수를 위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송신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김대호, 2007).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었던 법령이 망과 콘텐츠의 분류방식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제공되는 콘텐츠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콘텐츠를 전송하는 모든 망을 일괄적으로 전자통신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에 의해 이 루어지는 전송서비스를 콘텐츠 개념과 분리하고 있다.

독일의 방송통신법 체계는 중앙집권국가와 다르게 연방국가적인 성격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방송은 연방정부와 분리하여 각 주 관할로 분산시켜 16개의 주가 각각 방송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어 연방의회가 단일한 방송법을 제정할수 없다(최우정, 2009). 방송과 달리, 통신의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여 규제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방송통신법제는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융합 멀티미디어로의 변화 추세를 수용하고 있다. 일례로 주가 관할하는 방송・텔레미디어 국가협약(RStV)와 연방이 관할하는 텔레미디어법(TDG)을 통해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도 내에 수용하고자 하였고, 2007년에는 통신과 방송의 한 쪽에 속하지 않는 미디어법(TMG)의 제정을 통해 중간적 영역의 서비스까지 연방관할로 하는 새로

74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운 법제를 탄생시켰다(조경섭, 이현우, 류원, 박준국, 정석균, 2012).

<표 4-1> 독일 방송통신규제의 기본 틀

방송	통신	중간적 영역의 미디어
<ul><li>• 연방 각 주의 방송관계법</li><li>• 연방 차원의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RStV)</li></ul>	● 연방정부 관할 ● 통신법(TKG)	<ul> <li>방송 통신의 양자에 속하지 않는 미디어 서비스</li> <li>● 미디어 서비스 국가협약 (MDStV)과 텔레서비스법(TDG)</li> <li>● 텔레미디어법(Telemeden)</li> </ul>

자료: 조경섭 외 (2012)

# 제 2 절 국내 방송통신법제

우리나라에서 방송과 통신은 오랫동안 별개의 영역으로 발전해 왔고, 방송법과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별도의 법체계에 의해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고, 경계영역적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개별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규제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원철, 201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관련법제는 융합서비스, 방송, 통신, 전파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방송과 통신의 법적 정의를 비교하면 <표 4-2>와 같다.

	개 념	근 거
방송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방송법 제2조
전기 통신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야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전기통신기본법 제 <b>2</b> 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법제는 2000년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되어 왔다. 방송기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통신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재정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법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표 4-3>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 개념의 변화

2000년 이전 방송법 2000년 방송법 2004년 이후 방송법  "<방송>이라 함은 정치ㆍ (*방송>이라 함은 방송- 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 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 여론과 교양ㆍ음악ㆍ오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 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다. 데이터방송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이라 함은 정치·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 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 여론과 교양·음악·오 라·연예 등을 공중에게 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 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다. 웨어터방송	2000년 이전 방송법	2000년 방송법	2004년 이후 방송법
	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 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 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지상파방송나.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 중(개별계약에 의한 수 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 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 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나. 라디오방송 다. 데이터방송

자료: 김대호(2007).

2000년 이전의 과거 방송법은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지상파, 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하는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방송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방송서비스를 세분한 것이다. '방송 대 방송사업 대 방송 사업자'를 각각 연결하는 '전송수단 대 제공 서비스 대 사업자 관리'가 일대 일의 대청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규제하고 있다 (김대호, 2007).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통신·방송의 융합 현상, 인터넷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도입 등 기존 전송 수단 중심의 단순한 사업자 허가 체제를 통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적 서비스를 규제하기가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방송법 개정에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구분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방송의 범위에 수용하였다.

방송법 제2조의1에 따른 방송사업에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 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있으며 그 각각의 정의는 다음곽 같다 지상파방송사 업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 송을 행하는 사업이다.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 하는 사업이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업과 별개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서는 IPTV를 규율하고 있다(<표 4-4>참조).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인터넷에 대한 양방향성, 이용자 참여와 선택,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주요한 특징을 갖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김승모, 2008). IPTV법의 큰 특징은 방송통신 융합과 ICT 생태계 환경변화에 맞추 어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IPTV법에서는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 의 이원적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전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모두 갖도 록 되어 있는 기존의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서비스권역, 대기업 소유제한, 외국인 소 유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방송법과 IPTV법으로 유료방송서비스가 다르게 규율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비대 칭규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 스 등의 실시간 채널방송 및 VOD 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유료방송서비 스이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융합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통신사업자가 타인간의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 설치한 기존 통신용 전기통신설비를 통해서도 실현이 가가능 하다. 문제는 융합서비스가 방송인가 아니면 단지 전기통신설비를 매개로 이루어지 는 통신행위인가라는 점이다. 기존에 타인 가 통신매개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동영상정보 등을 일반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내용이 데이터로 판단되는 경우, 방송개념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방송법 제2조1호에서는 "데이터(문자・숫자・도형・이미지・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 음성 · 음향 및 이들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 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합서비스는 전송 네트워크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방송 또는 통신사업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법체계 상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표 4-4> 유료방송서비스 비교

 구분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프리미엄
전송망	케이블 망	위성방송망	유선 인터넷망
	RF 방식, IP 주소없는	IP주소 없는	IDHIAI
전송기술	패킷 전송방식	패킷 전송방식	IP방식
	(일방향,양방향)	(양방향)	(양방향)
콘텐츠	실시간빙	·송, VOD, 통신형 큰	<sup>코텐츠</sup>
단말기		TV	
QoS 보장여부		보장	
사업유형 (적용법률)	종합유선방송 사업 (방송법)	위성방송사업 (방송법)	IPTV제공 사업 (인터넷멀티
		(0 0 1)	미디어방송사업법)
진입규제		허가	

자료: 방석호(201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관련법제는 개별법이 C-P-N-D의 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복수의 분야 또는 전체 영역을 넘나드는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서 생태계의 흐름에 맞춘 중장기적이면서 통합적 성격을 갖는 법제체제가 마련되어 야 필요성이 있다. <표 4-5>에서는 ICT 분야의 법령을 생태계의 관련된 부분과 연 계시키고 있다.

<표 4-5> ICT 분야 법령과 관련 생태계 부문

ICT 분야	법령	ICT 생태계 부문
정보화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C-	
전자거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C-D
ICT 진흥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C-P-D

-		
ICT 분야	법령	ICT 생태계 부문
정보보호및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	C-P-D
전파	전파법	P-N-D
방송 <del>통</del> 신	전기통신기본법, 방송법	C-P-N-D
신규서비스	IPTV법	C-P-N-D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 체계와 해당 분야의 법률이 <표 4-6>에, 2008년 이후 제 정·개정된 방송통신 법령은 <표 4-7>에 나타나 있다. <표 4-7>를 통해 2008년 이후 제정·개정된 법령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 공정한 ICT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규칙의 수립,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경쟁 도입, 주파수 경매제 채택을 통한 경쟁 활성화, IPTV와 디지털 전환 등 신규 매체와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법제가 신설되었음을 들 수 있다.

# <표 4-6>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 체계

분야	법률
융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한스 첫 실 디 디 디 이 강 등 사 합 합     방송통신 발전 기 본 법
방송	<ul> <li>방송법</li> <li>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li> <li>한국교육방송공사법</li> <li>방송문화진흥회법</li> <li>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li> </ul>
통신	<ul> <li>전기통신사업법</li> <li>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i> <li>국가정보화 기본법</li> <li>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i> <li>전기통신기본법</li> <li>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li> <li>정보통신공사업법</li> <li>통신비밀보호법</li> </ul>
전파	● 전파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표 4-7> 2008년 이후 제정·개정된 주요 방송통신법령

Hol	H31E01110	제정·	<b>TO 119</b>	7151	
분야	법령/도입내용	개정연도	주요 내용	기타	
O ÷l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2008	· 방송법과 달리 이용자이익저해 행위금지 등 존재		
융합 서비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10	· 방송과 통신의 공통 기본이념과 진흥을 위한 사항 규정		
시장 경쟁	방송광고판매대행등 에 관한 법률 (미디어렙법)	2012	· 1공영-다민영 미디어렙체제 구축		
활성화	주파수경매제 도입	2010		전파법 개정	
공정 경쟁 보장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신설	2011	· 유료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유형 제시	방송법 개정	
이용자 권익	디지털전환특별법*	2008	·디지털 방송을 위한 수신기 보급	2013.12.31. 종료되는 한시법	
보호	개인정보보호조치 도입	2012	· 주민번호수집금지 · 개인정보누출 통지와 신고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sup>\*</sup>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 3 절 신규서비스 분야의 쟁점

ICT 생태계의 출현과 융합현상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 분야에 속하지 않거나 중복 된 분야에 속하는 신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의 문제와 경쟁 서비스 및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이 ICT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규율할 수

<sup>\*\*</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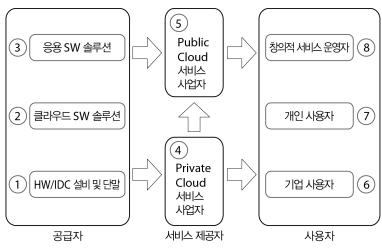
### 1. 클라우드 서비스

가. 현황 및 쟁점

ICT 혁신의 중심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목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가상화된 자원을 서비스의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시장은 2009년부터 연평균 27.4% 성장을 기록하여 2014년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10년부터 부터 연평균 47.6%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2014년에는 4.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전력을 줄이는 등 비용절감을 통해 그린 ICT를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는 그림과 같이 공급자, 서비스제공자, 사용자의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병일 외, 2012). 규제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의 정보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의 서버에 축적되므로 정보보호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sup>3)</sup>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최소한의 관리나 서비스 제공자의 작업만으로 신속히 제공 배포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컴퓨터 자원들(네트워크, 서비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공유된 집합체로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모델로 정의된다(미국국립표 준기술원의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구글 Gmail 등), PaaS(Platform as a Service; MS Azure 등),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Amazon EC2 등)이 있다(최경진외, 2012).

#### 82 방송통신 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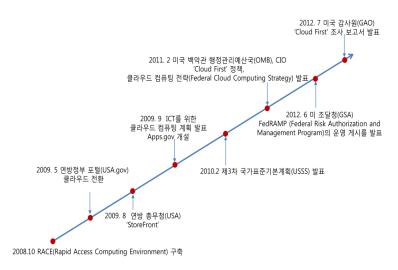


[그림 4-1]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자료: 김병일 외(2012).

## 나. 해외규제현황

미국은 2011년 클라우드 우선정책(Cloud First Policy)을 수립하여 연방 ICT예산의 1/4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2]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현황

자료: 김종우(2012)

유럽에서는 EC 전체의 차원에서 ICT 성장전략인 디지털 의제 정책 (Digital Agenda for Europe)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의제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럽의 정보통신 산업에 미칠 영향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할 규제완화 조치 등 이다. 유럽은 디지털 의제 정책 추진을 통해 EC 내 기업의 ICT 비용절감, 정부기관에서 지출하는 대민비용의 절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다.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의 3개 부처를 주축으로 하여「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클라 우드 서비스 발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지식경 제부를 주축으로 향후 5년 이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 15%를 목표로 하는 「클라 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 | 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 기술개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추진」을 통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개선 등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 급속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올해 부터는 정부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자원을 모아서 저비용·고효율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 PC, 스마트폰 등 다양 한 단말기로 언제 어디에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0월 「클라우드 서비스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 드」를 제정하였다.「클라우드 서비스 SLA 가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가용성, 데이터 백업, 복구 및 보안, 고객지원, 위약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방송통신위 원회, 2011c). 이 가이드의 성격은 클라우드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이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요구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 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제도 방향 모색,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 안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제도보완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 라.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보보호, 저작 권 분야에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정보통신서비 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규율대상으로 명시되지 않 아 사업자의 지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정보유출이나 장애 발생 시에도 사업자의 책임·의무가 불분명하여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적용과 이용자 권리보호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김병일 외, 2012; 최경진 외, 2012).

또한 기존 법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업종의 경우 전산설비 구비가 인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분야는 의료정보 외부 위탁 금지가 작용하는 등, 응용분야에서 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추세에 볼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복수의 부처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고 있어서 경쟁적 규제 또는 규제 간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시각의 법 개선은 신규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산업적, 정책적, 이용자 측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빅데이터 서비스

#### 가. 현황 및 쟁점

박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을 갖추고 유통속도가 빨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하며 ICT 생태계 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가 관리·분석 기술의 이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과거에는 저장되지 않았거나 저장되었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분석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에 사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가 빅데이터에 속한다 하겠다(경향신문, 2012. 10. 28.) 빅데이터는 의료, 치안, 국가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나 기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한 대처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각광받는 주된 이유가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때문이다. 맥킨지는 빅데이터 활용 시 미국 의료분야에서 연 3,000억 달러, 유럽의 공공분야에서 연 2,50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이응용, 201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의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시 경제효과는 10조 7천억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4-8> 빅데이터의 특성과 효과

특 성	효 과
대규모(huge scale)	<ul> <li>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능력 향상</li> <li>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패턴분석 기능</li> <li>데이터가 많을수록 유용한 데이터 증가 또는 전혀 새로운 패턴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도 증가</li> </ul>
현실성(reality)	· 일상에서의 데이터 기록물의 증가 등 현실정보, 실시간 정보의 축적이 급증될 전망 · 개인의 경험, 인식, 선호 등 인지적인 정보 유통 증가
시계열성(trend)	· 현 시점 뿐 아니라 과거 데이터의 유지로 시계열적인 연속성을 갖는 데이터의 구성 ·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 흐름 상의 추세 분석 가능
결합성(combination)	· 의료, 범죄, 환경, 안보 등 타 분야,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의 정보 발견 · 실제 물리적인 결합 이전에,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 안전성 검증 분야 발전 가능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 나. 해외 규제현황

세계 각국은 국가보안, 교육, 교통, 의료 등의 산업과 사회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주도 하에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NIH), 국방부(DoD),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에너지부 (DoE), 지질조사연구원(USGS)의 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통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2년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에 참여 중인 6개 기관의 총 R&D 예산 중 0.1%인 2억 달러가 이 계획에 투입될 예정이고, 참여기관들의 R&D 예산 확대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응용, 2012).

미국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통해 빅데이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정부주도로 빅데이터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더불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부처가 빅데이터 사업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중복사업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빅데이터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되는 다학제간 연구개발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응용, 2012).

# 다.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우리나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산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ICT 관련 정부부처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정책기조를 수립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6월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와 관련된정책적 우선과제를 발표하였다. 2012년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신규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 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양성,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 빅데이터 산업실태 조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 라. 정책적 시사점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이 제시되고 ICT 생태계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빅데이터의 보관과 이용에 따르는 사회적 문 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빅데 이터를 통해,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대한 양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우려된다. 빅 데이터가 포괄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빅 데이터의 수집이 저작권이 있는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확장되는 요소는 무분별하게 저작물이 복제, 전송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일시적 복제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복제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와 저작권자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디지털 타임즈, 2012, 9, 26.)

세 번째로 빅데이터로 인한 네트워크의 혼란 또는 마비가 우려된다. 빅데이터 시대와 더불어 트래픽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블랙아웃' 현상이 우려됐다.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돼 있는 금융·교통·의료·국방등의 전반적인 사회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 3. N-스크린 서비스

# 가. 현황 및 쟁점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시대에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미디어를 이용해야 했던 기존의 콘텐츠 이용형태가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 TV가 보급되면서 기기와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이 형성

되고 이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는 여러 개의 화면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동일한 콘텐츠를 TV, PC, 모바일 기기 등 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볼 수 있다. N-스크린 서비스의 성장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의 발전이 기여를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방대한 용량의 콘텐츠 저장 문제 를 해결함으로써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대형 미디어 사업자의 의 N-스크린 환경 구 축에 기여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N-스크린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공급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 고 있다. <표 4-9>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N-스크린 서비스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9> 국내 N-스크린 서비스의 현황

사업자		서비스	서비스 개시	콘텐츠	방식	이용료
	SBS	고릴라	2011. 3.	SBS TV, 라디오	실시간	무료
T1 41 -1	KBS	K플레이어	2011. 9.	KBS TV, 라디오	실시간	무료
지상파 방송사	MBC SBS	pooq	2011. 10	MBC, SBS 계열 PP	실시간, VOD (스트리밍)	실시간: 무료 VOD: 유료
	KBS MBC SBS	콘팅	2009. 8.	지상파 3사 방송 프로그램	VOD (다운로드)	유료 (편당, 정액)
	CJ 헬로비전	tving	2010. 7.	MBC 제외 지상파 및 PP채널	실시간, VOD (스트리밍)	유료 (편당, 정액)
SO	현대 HCN	에브리온	2011. 10.	50개 PP채널 및 판도라TV	실시간	무료
PP	CJ E&M	마이 캐치온	2012. 8.	영화전용	VOD	유료
통신사	SKT	Hoppin	2011. 1.	영화, 지상 파, 케이블	VOD (스트리밍 다운로드)	무료 <i> </i> 유료
포털	다음	TV팟	2007. 1.	방송클립, UCC	VOD (스트리밍)	무료

# 나. 규제현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고 전송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N-스크린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2년 11월 지상파 방송사가 제공하는 푹(pooq)의 가입자는 100만을 돌파하였고, CJ 헬로비젼의티빙(tving)의 순수 방문자는 9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푹의유료 가입자는 7만명, 티빙의 유료가입자는 10만명에 불과하여(미디어스, 2012. 11. 5.) 실질적인 수익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N-스크린 서비스 진화에 따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미디어 포럼'과 '인터넷기반 유사방송서비스 포럼' 등 N-스크린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 다. 시사점

SBS와 MBC가 제공하는 '푹', CJ헬로비전 '티빙', HCN-판도라TV의 '에브리온TV' 등 N스크린 서비스는 콘텐츠 편성과 광고면에서 기존 방송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지상파 TV와 케이블 TV, IPTV, 위성 DMB 등 기존 방송 플랫폼의 경우, 방송법, IPTV법 등 방송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반면, N-스크린과 스마트TV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되며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 사업자와 N-스크린 서비스 사업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DMB 사업자와 N-스크린 사업자를 비교해보면, 지상파 DMB 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일정 권역에서만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N-스크린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법적용을 받고 있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존 방송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 재허가는 물론 프로그램 편성과 채널, 광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 외에도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유료 콘텐츠가 공유되는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예상된다. 현재 콘텐츠 보유 사업자들은 스크린의 증가만큼 추가로 저작권료를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N-스크린 서비스의 확립을 위해서는 저작권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분배 등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위성방송, IPTV 등 신규 플랫폼이 등장하는 경우 지상파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요구해왔고. N-스크린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N-스크린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기인 스마트 TV에 대한 망투자비 분담 요구로 인해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가 저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ISP 등은 기존 기기보다 많은 트래픽을 제공하는 스마트 TV 제조사에 대해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N-스크린 서비스를 둘러싼 망중립성 관련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N-스크린 서비스는 그 기술적 가능성과 성장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유료가입자수가 적어 뚜렷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매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정도로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갖는다.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와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전송경로별, 수직적 규제체제를 대체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 제 4 절 방송통신법제 개선방안

#### 1.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법제에 대해서는 첫째, ICT 생태계의 통합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ICT를 규율하는 소관 법령이 서비스별,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규제체계 하에서는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법령 을 제정하게 되므로 ICT 관련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주무부처가 중복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부차원의 핵심 정책을 ICT 전문부서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행 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2011년 6월에 있었던 SK 커뮤니케이션즈의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해킹, 같은 해 11월 에 일어난 넥슨의 1.3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등 ICT분야와 관련되어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안이 일어났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보호개선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제목적과 접근방법이 상이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ICT 생태계의 정책 이슈를 각각 다룰 경우, 규제의 중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관성이 침해되 어 효율적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네 트워크 및 전송 분야를 규제의 핵심으로 하므로 다양한 형태로 융합이 이루어지는 ICT 생태계 전반의 정책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생태계 각 부문을 융합한 새 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나 법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법적, 제도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DMB 사업자와 N-스크 린 서비스의 규율, 스마트 TV 서비스의 방송법상 역무침해여부, KT 스카이라이프 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위성방송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인지 여부 등은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이다. ICT 생태 계에서는 신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N-스크린 서비스, DCS 등의 신규 융합서비스가 생태계 경쟁의 핵심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개선방안

방송통신법제에 대한 개편은 첫째, C-P-N-D 생태계의 흐름에 맞춘 통합 법제체제 의 수립, 둘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적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가 능하다. 첫째, 통합형 법제 수립을 통해 C-P-N-D 흐름의 생태계 추세로 대표되는 ICT 생태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관련분야를 총괄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유관 정책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유무선통신과 방송관련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신규서비스 출현 시 기존 법체제 내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되면,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수정 또는추가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둘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제를 개선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간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인 OTT(Over-the-Top) 서비스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국가는 OTT 서비스진흥을 위해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의 EU 국가는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형태의 신고를 통해 사업이 가능하나, 유료방송사업자는 허가를통해 사업을 하게 되므로 양자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구분 및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하여 융합서비스, 방송, 통신, 전파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는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심화되고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됨에 따라 규제의 공백 또는 중복, 불평등한 규제, 나아가 공정경쟁과 산업발전의 저해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살펴본 OTT, DCS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방송ㆍ통신영역의 규제목적과 진흥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개선책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과통신을 통합하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기 이전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국민적 논의와 이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방송분야에 구분되어 있는 법령 분야를 통합하여 단일 방송법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방송법」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유사한 서비스와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을 통해 비대칭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비대칭규제는 신규진입자의 서비스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고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의 대칭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존 사업자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 (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하는 것이 선결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 5 장 ICT 산하기관 개선방안

# 제 1 절 산하기관 현황분석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과 사회전반적인 발전에 있어 ICT 분야가 갖는 중요성을 인 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에 중점을 둔 정책체계수립을 모색하고 있다(Bauer, 2010; Fransman, 2010).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ICT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ICT 산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 대해 지원, 진흥기능을 수행하고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은 ICT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CT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산하기관에는 199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 보통신 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정보통신 관련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네 개 부처로 이관되면 서 ICT 산하기관은 그 숫자와 체제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ICT 분야는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이 통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 간의 융합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을 갖는 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을 통해 정부기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산하기관을 규정하는 ICT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서 산하기관 존립의 구체적인 근거와 활동과 운영에 대한 기능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방송통신의 융합 및 ICT 생태계 조성 등 급속한 환경변화를 맞이하 고 있는 ICT 산하기관의 변동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ICT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기 위 해서는 ICT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1. 산하기관의 특징과 유형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조직, 재정, 인력의 규모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산업화 추세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1970년대에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공식적인 정부 조직 뿐 아니라 실제로 공공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부서에 포함되지 않는 준공공조직, 산하단체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부문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정부기관과 함께 산하기관 역시 확대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선호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을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Fliders & Smith, 1999). 첫째, 다양한 기능을수행해야 하는 정부는 특정 서비스를 집중하여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 목표를수행할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산하기관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정부운영은 합법성을 강조하여 경직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이나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합이다. 셋째, 수요자와 거리감을 축소하고 기관운영을 탈정치화하기 위해서이다(임병연, 2004). 이 밖에도 작은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가 따라 정부부문의 확장이 어렵게 되자 정부부문이 아니면서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산하기관을 선호하게 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김판석, 2003; 임병연, 2004).

정부 산하기관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탁·위임받아 대행하면서 실제 정부부처에는 포함되지 않는 조직을 지칭하며 관할 정부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은 비정부 공공기관(NDPB/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준정부조직(QUANGO/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범국가부문(Wider State Sector), PGO(Para-Governmental Organizations)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OECD, 2002). 우

리나라의 산하기관은 설립목적, 기능, 조직유형 면에서 다양하고 정부의 필요에 의 해서 설립되고 공공성이 특징인 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예산 처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 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표 5-1>은 공공 기관의 유형 및 2012년 현재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산하기관의 범위는 위에서 분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외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법정협회,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관련부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부처개편에 따라 산하기관 설립, 운영 근거법의 소관부처가 바뀌면 부처별 관장업무에 따라 산하기관이 이관된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존립과 기능은 관련부처의 존립여부에 좌우된다는 특성이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비 교할 때,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재량권이나 기업적인 성격이 덜 하고,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하여 이 연구에서의 ICT 분야의 산하기관은 공기업보다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 공기관에 비중을 두었다.

<표 5-1>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구분 (기관 수)	내 용	
공기업 (28)	직원정원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14)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14)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 <b>73</b>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17)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형 (5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17)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alio.go.kr)

#### 2. 해외 산하기관정책 현황

# 가.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에 토대를 둔 시장주도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는 국방, 치안 등 순수 공공재 영역에서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럼에도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기관이 설립되었다. 디을 은 독립청(indenpendent agency),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RC),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산하기관(Quasi-Governmental Entities)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조택, 송희준, 김호섭, 이원희, 2005).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시장중심, 결과중심, 고객중심으로 공기업도 공기업관리법(the 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이라는 10개 조항의 법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 한정하여 공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김도승, 이상경, 장철준, 최정민, 2012). 특히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설치와 폐지의 기준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시장성 검토(market testing)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성 검토는 정부업무개혁법(Federal Activities Inventory Reform Act: FAIR) 과 관리예산처 회람 A-76(OMB Circular A-76)을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공공부문의 업무를 정부업무와 상업업무로 구분하여 산하기능의 기능 및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업무가 상업업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달하거 나 민간위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상업업무인데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조택 외, 2005)

#### 나. 영국

영국에서 공공기관은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공기업 (Public Corporations), 국가의료서비스기관(National Health Service Bodies: NHS), 영 국은행(the Bank of England),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Authorities)의 다섯 가지 로 구분된다(김도승 외, 2012). 비부처공공기관은 다시. (1)행정적, 규제적, 집행적,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executive NDPB), 장관 및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 전문적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Advisory NDPB),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기관(Tribunal NDPB), 방문자 위원회(Boards of Visitors)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4 가지 종류의 NDPB 이외에도 임시조직이 보건, 교육, 교통, 범죄방지 등 공공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조택 외, 2005).

영국정부는 NDPB나 임시조직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중앙총무국은 신설심사, 재정지원,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NDPB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5년 주기 로 시행하고 있다 (조택 외, 2005). 공기업을 규율하는 법제로는 공기업의 민영화법,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종합규정 및 공공기관 평가제도 등이 있다(김도승 외, 2012). 관리부처들은 각종 공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1)목표의 계약, (2) 재정목표 및 성과목적 설정, (3) 투자심의 및 요금규제, (4) 모니터링 등이 활용되고 있다(김도

승 외, 2012).

#### 3. 우리나라 산하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ICT 정부부처체제가 크게 변화한 것은 1994년과 2008년을 기점으로 한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서이다.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1) 1994년 이전까지의 체신부, (2) 1994년에서 2008년까지의 정보통신부, (3) 2008년에서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해왔다. 행정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정부산하기관의 개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1998년 외환외기를 계기로 조직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송희준, 2002). 각각의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1994년 개편이전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우편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발족한 체신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외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체신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우편신규업무와 정보통신 관련신규업무를 담당하며 정보통신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크게 정보통신, 전파관리, 정보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상공자원부의 통신기기 관련업무, 과학기술처의 소프트웨어 관련업무, 체신부의 유선방송 관련업무 등을 인수함으로써 부처간통합적인 정보통신정책을 관장하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나. 1994년 -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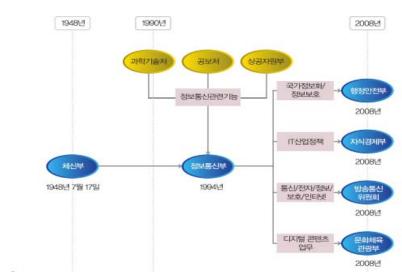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정보통

<sup>4)</sup> http://i-museum.kisa.or.kr/sub01/article\_read.do?pageIndex=1&aSeq=2908&cate2=11

신부가 폐지되고 정보통신 관련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 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이 통합 된 ICT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ICT 산업의 지원기능이 분산된다는 문제점 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부처별 기능 및 예산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송통신의 융합추세 및 ICT 생 태계에 대한 관심 등 ICT 분야의 환경변화와 정책지원기능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앞으로 ICT 분야 산하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 다. 2008년 - 현재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정보통 신부가 해체되고, 같은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ICT 관련업무 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분산 이관되었다. ICT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지식경제부는 ICT 기술개발, 소프트웨어산업, 우정사업,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정보보호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 및 통신 분야는 방송통신위원 회가 주축이 되어 방송, 통신, 전파, 인터넷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ICT 생태계 조성에 관련되는 업무기능이 타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의 개편에 대해서는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이 통합된 ICT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ICT 산업의 지원기능을 분산시켰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부처별 기능 및 예산 중복에 따라 ICT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림 5-1]은 1948-2008년에 걸친 우리나라 ICT 관련 규 제부처의 개편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 ICT 규제부처의 변화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2008).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맞추어 시행된 산하기관 개편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는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ICT) 영역의 산하기관 역할에 대한 대규모의 개편을 실시하였다. 정부부처의 통폐합과 업무조정에 따라 ICT 분야의 산하기관체제에도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정은 과거 각 부처별로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보호, 정보화 격차해소, 컨텐츠 진흥 등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과 콘텐츠 분야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을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그림 5-2]에서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ICT 산하기관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5-2>에서는 정부부처별 산하기관의 근거법령, 기능, 관련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8 이후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합>('09.7.2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통합>('09.7.23)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합>('09.5.2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저작권위원회('09.7.23)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홍원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이전 <정보통신부>

[그림 5-2] 2008년 이후 ICT 산하기관 변화

# <표 5-2> ICT 관련 부처별 산하기관의 근거법령, 기능 및 주요 관련법

정부부처	산하기관	근거법령	주요 기능	주요 관련법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전파법 제66조	· 전파관리, · 방송· 통신· 전파의 진흥 방송통신융합, 진흥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인터넷 진흥원 (KIS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 개인정보보호 연구 ·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 전자서명법 · 인터넷주소자원 에 관한 법률

정부부처	산하기관	근거법령	주요 기능	주요 관련법
지식 경제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b>26</b> 조	<ul> <li>SW산업,</li> <li>전자산업,</li> <li>정보통신산업,</li> <li>SW융합,</li> <li>ICT산업,</li> <li>SW 활성화</li> </ul>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통신 연구원 (ETRI)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ul> <li>연구개발</li> <li>-방송 통신 분야</li> <li>-SW 콘텐츠 분야</li> <li>-IT기반 융복합 분야</li> </ul>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 안전부	정보화 진흥원 (NIA)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	<ul> <li>국가정보화</li> <li>전자정부,</li> <li>공공부문 정보보호,</li> <li>정보문화,</li> <li>정부통합전산 센터</li> </ul>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문화 체육 관광부	콘텐츠 진흥원 (KOCCA)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 디지털 콘텐츠, · 영상/게임 콘텐츠산업육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 위원회 게임물등급 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저작물의 이용질서확립 등 공정한 이용도모 · 게임물의 등급분류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 제 2 절 산하기관 개선방안

## 1. 시사점

기획재정부가 2012년 4월에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2011년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6,541명이 늘어난 것으로, 신규채용은 전년보다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직원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공공기관 경 영정보공시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부채비율 면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008년 말 286조2천억원에서 2011년 말 463조5천억원으로 최근 3년 간 177조3천억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 말보 다는 61조8천억원 (15.4%)이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7년 112%에서, 2010년 165.1%, 2011년 196%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기획재정부, 2012). 이 연구에 서는 산하기관 체제 및 업무 합리화를 지향하는 개선방안을 연구의 범위로 하므로, 경영 합리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영역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ICT 환경에 정부 부문과 공공 부문의 기능과 조직이 대응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ICT 산업 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발전에 있어서 ICT 분야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할 때, 산하기관 체제의 개편은 스마트 생태계 환경에서의 C-P-N-D 부문을 총괄하는 ICT 관련 부처의 운영과 흐름 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산업발전에 부응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정부조 직개편 당시 산하기관의 개편의 근간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부처 통폐합이 었다. 대규모의 부처 통폐합이 실시됨에 따라 산하기관의 개혁도 민영화, 통폐합 등 의 외형적인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산하기관 체제 개편 결과, ICT 분야의 부처별 기능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업무가 유사한 경우가 있어 기능중복이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해당기능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기능의 일관성을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 진흥업무의 경우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 원, 콘텐츠진흥원 각각의 기관이 모두 유사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기능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 기능 중복의 유형 및 정도를 평가하여 기능이 상호보완적이 여서 협력이 필요한지, 또는 기능이 중복되나 독립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유사기능을 수행한다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기관이라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 간 업무의 명확성 이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해 야할 것이다(조택, 송희준, 김호섭, 이원회, 2005). 둘째, 산하기관의 설립에서 고려 해야 할 요소는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사업내용의 공익성이다(조택 외, 2005). 산하 기관은 주무부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효율성 등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 정치적 타협이나 정권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산하기관의 설립이나 폐지 결정 시 보 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하기관도 ICT 생태계 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 조직의 내부요인, 국내환경, 국제환경 등 여러 가 지 요인에 의해 조직자체가 변화를 겪을 수 있다(강윤호, 2003).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목표를 정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산하기관의 자체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복성 또는 업무공백의 개선

ICT 분야를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련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ICT 관련기능 정비 및 부처의 기능이관과 더불어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당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이 통합, 정비되어야 한다. 2008년 개편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산하기관 체제에서는 전문

성이 요구되는 ICT 분야에서의 연구 및 행정지원의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방송통신 영역 의 연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산하기관 역할 정립 및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산업 분야를 다루는 복수의 방송통신 관련 산하기관이 존재하여 효율적이 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친 기능 통폐합의 결과 있어야 할 산하기관이 부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 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3개 산하기관이 2009년 인터넷 진흥원으로 통합된 후 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본부에서 정보보호 기획, 제도, 정 책, 사고점검, 피해대응 등의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 기술개발 등 과거 정보보호진흥원이 수행하던 기술적인 측면의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전문적 인 산하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이 분야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 나. 업무 전문성의 제고

2008년의 조직개편과 산하기관 통폐합은 스마트 생태계의 출현을 예측하지 못했 던 축소지향적인 개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직개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ICT 생태계의 흐름에 대한 예측이 우세하지 않았으며, 산업발전의 중심을 여전히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ICT의 중심이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에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ICT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ICT 생태계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통 합과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ICT 생태계의 추세 및 ICT 분야와 교통, 의료, 교육 등 의 이종산업 간의 융합의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전문화된 산하기관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구글과 애플 등 세계적인 ICT 기업은 연관 산업을 넘어서 스마트카 등 이종 산업과의 융합시장을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ICT 산하기관 체제에서도 관련 산업의 영역을 넘어 창조되는 새로운 시장을 대 상으로 하여, 각 산업 주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산하기관 체제가 요 구된다. 전문화된 산하기관 체제의 수립은 ICT 산업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통해 우 108

리나라가 ICT 산업에서 빠른 후발주자(fast follower)에서 선두주자(first mover)로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ICT 환경의 패러다임이 재편됨에 따라 세대 간 정보격차, 개 인정보보호 등 정보사회의 규범과 관련된 정책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산하기 관의 기능보완을 통해 규범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보격차의 문제는 행정안전 부 산하 정보화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정보화의 틀에서만 정보격차를 다 루는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나 정보취약계층 및 노년계층 에 대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 는 동시에 업무 중복성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업무 성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기 능별로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핵심 수출 산업인 ICT 분야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제 협 력을 전담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고 정보보호 및 인터넷 침해 대응을 위한 전문기 관도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둘째, 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는 유사・ 동일한 방송통신 산업 분야의 지원기능을 일원화하여 부처 간, 기관 간 업무 중복이 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융합 추세가 일 어나고 있는 ICT 산업 분야는 향후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산하기관 의 전문화가 현재 산하기관 개편과 관련되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산하기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 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은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분야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나, ICT 분 야의 발전 추세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한 분야와 상대적으로 필 요성이 미미한 분야를 가려내어 체제 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산하기관을 본래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의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래 <표 5-3>은 ICT 법령·산하기관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나타낸 표이다.

<표 5-3> ICT 법령·산하기관의 개선방안

구 분	현황	개선방안
법령	o ICT 생태계의 통합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신규서비스 규제 공백 또는 중복 규제 등 규제의 한계 발생 o 이용자 권익보호에 미비	o 통합법령제정 - 법적 근거 및 규제기준 수립 - 정책추진체계의 통합 o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 반영 - 동일시장내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 불균형 개선 o 관련법을 보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산하기관	o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 또는 필요업무의 공백 발생 - 이용자에게 혼란 초래 가능 o 전문성의 저하	o C-P-N-D의 생태계 추세를 반영하는 전문화된 산하기관 체제 수립 - 업무 중복성 또는 공백의 개선 - 업무 전문성의 제고

# 제6장 결론

방송통신 융합현상의 보편화 및 스마트 생태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ICT 생태계 환경을 반영하는 방송통신 법제도 및 산하기관의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 생태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통합법과 정부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하기관 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와 산하기관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우선 현재 법제도 면에서는 ICT 분야의 소관법령이 서비스별,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범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을 특정부처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법체계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N-스크린 서비스 등 특정 산업 및 서비스분야로 한정되기 어려운 신규 융합서비스를 규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체제에 있어서는 2008년 정부부처 개편 당시 ICT 분야 산하기관을 대폭 통폐합하고, 분산하여 복수의 정부조직에 이관함으로써 산하기관 간의 업무 중복성이나 업무 공백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콘텐츠 산업지원이나 R&D 지원 등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ICT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 이상의 산하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정보보호의 기술적인 분야는 과거 단일 기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기관의 부서 단위로 축소되어 충분하게 정책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법제와 산하기관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법제 차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ICT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합법 체계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경우,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공백 또는 중복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등 유사

한 방송 서비스를 별개로 규율하고 있는 법제를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등의 점진적 이고 단계적 통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기관 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존립 및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정부부처 또는 규제기관의 향후 정책방향설정과 연계되어 면밀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과거 조직개편에서 지나치게 집중된 산하기관의 기능을 ICT 생태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의 고양을 에 따라 분리시키는 동시에, 업무중복이 나타나고 있는 산하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앞으로의 산하기관 체제는 C-P-N-D로 대표되는 생태계의 전문화와 통합화 추세와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의 ICT 통합 부처에 요구되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거듭나야할 것이다. 정부는 ICT 생태계의 발전을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해당사자이자 분쟁의 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정부는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관점을 통해 장기적인 ICT 산업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의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 및 산하기관 체제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만석(2005), 영국의 방송통신융합 구조 개편과 그 함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곽진희(2001),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에 따른 법적 문제,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전문가 토론회, 방송위원회

기획재정부(2012), 201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김대호(2007),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방향, 광고정보센터.

김도승, 이상경, 장철준, 최정민(2012),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김병일, 신현문(2012),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및 정책방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7권 제2호, 137-148.

김승모(2008), IPTV법 시행령 제정 방향, *통신연합*, 2008년 봄호, 69-75.

김종우(2011), 클라우드 정책 프레임 워크와 해외정책 비교 분석, 한양대학교 클라우드서비스 정책연구센터.

김한주(1997), 미국의 전파관리제도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2권 제3호, 33-41. 김형찬외(2006), *통신 방송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타임즈(2008),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2012. 9. 26.), 빅데이터와 저작권의 상생.

미디어스(2012. 11. 5.), N스크린 'poog' - 'tving' 성적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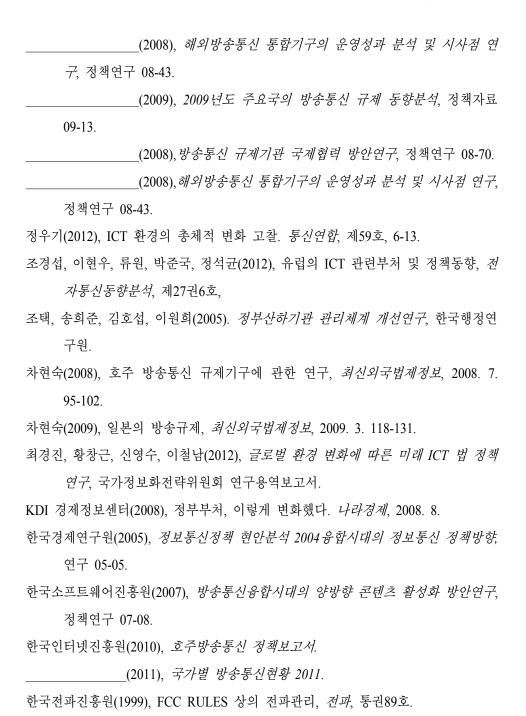
박남기(2004), 매체별 방송사협회 운영현황, KBS 해외방송정보.

박석지(2012), ICT 신기술 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전략모형,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7권 제4호, 29-39.

박유리(2012). 스마트 환경에서의 IT생태계의 의미와 시사점. IT R&D 정책 동향.

- 박창현, 김민선(2011),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No. 2012-12.
- 방송위원회(2003), 방송 통신 체계 정비 및 위원회 대응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1), *외국의 방송통신 내용 규제 체계 조사연구*, KCSC 2011-010.
- 방송통신위원회(2009),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구 심판관리제도 연구1(북미), 09-진흥-다-21.
- \_\_\_\_\_(2010),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구 심판관리제도 연구2(유럽), 10-진흥-다-12.
- \_\_\_\_\_(2011a), 해외 방송통신규제기구 심판관리제도 연구3(아시아), 11-진 흥-다-06.
- \_\_\_\_\_(2011b), *방송통신정책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 연구 지정.
- \_\_\_\_\_(2011c), 방통위, 클라우드 SLA 가이드, 정보보호수칙 마련, 보도자료. (2012),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추진자료
- 방석호(2011),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 2011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연차보고서.
- 송종길(2001), *방송 통신 융합시대 방송 정책 및 규제 기구개편 해외 사례 연구 : 미 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 송희준(2002), 정부산하기관의 현황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2권제2호. 267-287.
- 안민호(2010),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II) 시리즈 10-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유지은, 이기백, 최문기, 조항정(2012).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전략 분석 및 정책 제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7권11호, 1058-1071.

- 윤성옥(2010), 한국: 시청자의 매체 접근권과 선택권 보장이 최우선, *헤외방송정보*, 2010 10월.
- 윤석훤, 김사혁 (2011), *미래인터넷 산업 생태계 분석.* 정책연구 11-31.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윤혜선(2011),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 5권 제 1호, 202~219.
- 이민호, 남승용(2008), 해외주요국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및 규제기관현 황, *통신연합*, 2008봄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이상식(2002),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규제 기구의 국가 간 비교 연구, *정보화 정책저널*, 제9권2호, 18-36.
- \_\_\_\_\_(2008), 방송통신 규제 기구 통합과 효과에 관한연구: Ofcom 사례분석, *언론* 과학연구, 제8권2호, 272-306.
- 이응용(2012), 미국 정부의 빅데이터 R&D 전략,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2012. 8.
- 임동민(2004), 영국 Communication Act 2003의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3호, 1-34.
- 임병연(2004), 선진외국의 산하기관 평가실태와 적용가능성 분석, 한국정책분석평 가학회·기획예산처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 전성주, 정현준(2011), *ICT 산업 통계 및 주요 동향 연구*, 정책연구 11-32,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전숙현(2011.1.), CTIA Bluetooth IOT WG회의, TTA저널/정보통신표준화소식
- 정보통신부(2004), 통신 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향.
- \_\_\_\_\_(2005), *IT부문 전략기획기능 발전방향모색*. 정보통신학술연구 04-학술 -01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IT부문 전략기획기능 발전방안 모색 정보통신학술연구*, 04-학술-010.



<해외문헌>

ACMA(2010), ACM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August 2010,

ARCEP, Rapport public d'activité de l'ARCEP 2009, 2010. 6.

Bauer, J. M. (2010), Regulation, public policy, and investment in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Policy*, 34(1-2), 65-79.

Colin, F.(2005), Droit public economique, Gualino editeur, Paris..

Damanpour, F.(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

DTI & DCMS(2011),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s.

Digital Agenda for Europe, http://ec.europa.eu/digital-agenda/

Drucker, P.(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CC, http://www.fcc.gov/

Fransman, M. (2010), *The new ICT ecosystem: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gul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sur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publiée au JO le 10 juillet 2004.

Loi n°2007-309 du 5 mars 2007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diffusion audiovisuelle et à la télévision du futur publiée au JO le 7 mars 2007.

NAB, http://www.nab.org.

Nachira, F., Dini, P., & Nicolai, A. (eds.) (2002), A network of digital business ecosystems for Europe: Roots, processes, and perspectives. European Commission

OECD(2010),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10

Ofcom, http://www.ofcom.org.uk/

Oftel, A Guide to 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http://www.ofcom.org.uk/static/archive/oftel/about/oftel guide.pdf

DeLong, Bradford J.(2002a),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on business cycl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3(2), 19-22.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New York: Free Press.

#### ● 저 자 소 개 ●

## 김 희 정

-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신문방송학과 석사
- ·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텔레컴 석사
- · University of Florida 언론학 박사
-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책임연구원

## 신 현 필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임연구원

## 김 진 기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석사
-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uffalo 경영학 박사
- 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박 윤 미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임연구원

## 권 오 상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석사
-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법학석사 (LL.M.)
-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

### 김혜경

- 중앙대학교 화학과 학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임연구원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2-02 방송통신관련 법령·산하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2년12월 28일인쇄2012년12월 28일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